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운 영 지 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목 차

1. 목적	1
2. 적용범위	1
3. 용어의 정의	1
4. 사업추진체계	2
5. 사업추진절차	4
6. 참가기업 신청 및 접수	5
7. 평가 및 선정	9
8. 협약 및 지원금 지급	15
9. 중간점검	19
10. 사업정산 및 점검	20
11. 제재사항 및 환수	22
12. 시행일	24
[별첨 1] 단위과제별 운영기준	25
1. 시제품개발 지원	
2. 디자인개발 지원	
3.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4.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5.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지원	
6.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지원	
7.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8. 홍보판로개척 지원	
9.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10. 디지털 전환 지원	
11. 온택트 홍보판로 지원	
[별첨 2] 과제서식	

1. 목 적

이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기술혁신 및 수출주도 중소기업 중 성장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지원을 통하여 경기도형 강소기업인 “스타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경기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사업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가. 추진체계 관련 용어

- 1) “사업총괄기관”이라 함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배정,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기도를 말한다.
- 2) “사업관리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경기도로부터 사업을 보조받아 사업 전반을 전담하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GBSA)을 말한다.
- 3) “평가위원회”라 함은 과제의 도출 및 선정 등의 평가와 협약의 해약, 중단, 실패 과제 등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5인 내외의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 4) “지정회계기관”이라 함은 사업비 정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업총괄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말한다.
- 5) “참여기업”이라 함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스타기업 선정기업을 말한다.
- 6) “과제책임자”이라 함은 참여기업의 과제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사업추진체계

가. 추진체계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체계도〉



나. 사업총괄기관

경기도는 사업총괄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업의 기본계획 및 예산 수립,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
- 2) 사업 세부 추진계획서 심의 및 승인 등

다. 사업주관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업주관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 1) 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2) 사업신청서 접수·검토 및 평가
- 3)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및 중복여부 확인
- 4) 사업의 중간점검 및 최종(완료)보고서의 접수 및 검토
- 5)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6) 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GBSA, 참여기업)
- 7) 사업비 지급 및 정산, 결과보고 등
- 8)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라. 평가위원회

사업주관기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산·학·연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사업계획 검토·확인 및 지원 대상 참여기업을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
- 2) 협약의 해약, 중단, 지원금 회수 및 제재 등의 안건 심의
-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에서 요청하는 사항 등

마. 지정회계기관

지정회계기관은 과제 추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총괄기관에서 별도로 지정한 회계법인이며, 지정회계기관은 참여기업의 과제정산 업무를 수행한다.

바. 참여기업

참여기업의 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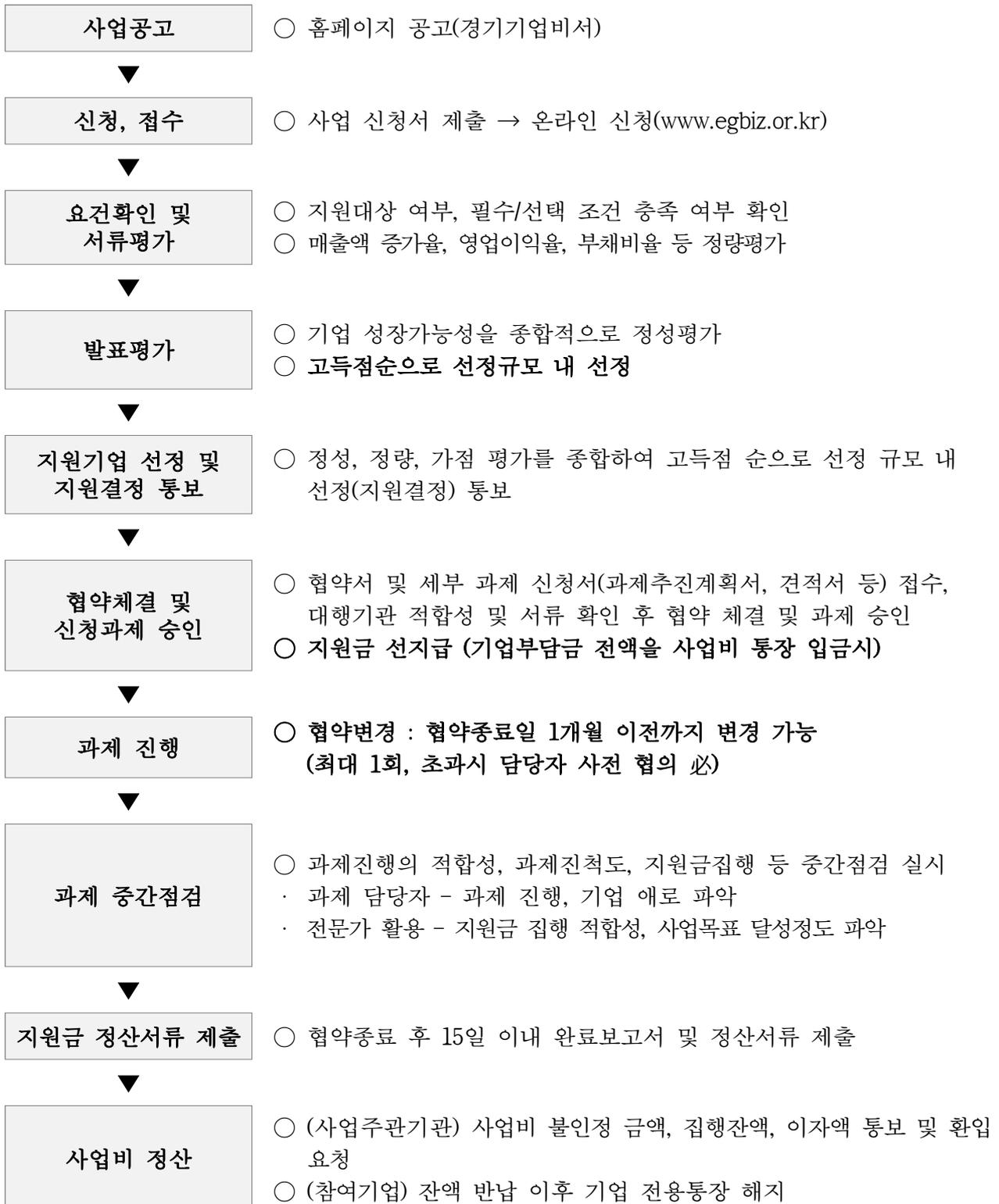
- 1) 과제 계획 수립 및 선정 과제의 사업화 추진 주도
- 2) 선정과제 사업비 집행과 기업부담금(현금) 부담 등
- 3) 사업의 중간점검표, 완료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 4) 사업성과의 활용 및 관련 보고서 제출 등
- 5)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

사.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참여기업 과제의 실무
- 2) 과제책임자 또는 과제책임자의 연락처 변경 시 사업주관기관에게 변경 신고
- 3)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5. 사업추진절차



6. 참가기업 신청 및 접수

가. 사업 시행계획의 공고

- 1) 사업주관기관은 신문 등 대중매체 또는 경기도, GBSA 및 유관기관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 2)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사업목적 및 사업내용

나) 신청자격, 신청요건, 평가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

나. 신청대상

- 1)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아래의 ‘필수조건’ 모두와 ‘선택조건’ 중 한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유형	자 격 조 건
필수조건 (①~③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경기도 내 ‘주사무소’ 또는 ‘등록공장’ 설치·운영 ②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치·운영 ③ 전전년도 매출액 5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중소기업(지식서비스기업*은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 지식서비스기업 - 산업기술분류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분류 ‘지식서비스’ 업종 기업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종목이 있으며, 그 종목이 주된업종인 경우 반영 가능. - 주된업종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참조
and	
선택조건 (①~④중 1개 이상 충족)	①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② 전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③ 최근 2년간(전전년도 ~ 전전년도-1) 매출액 증가율 10% 이상 ④ 전년도 고용증가율* 5% 이상 또는 채용인원 3명 이상 * 고용증가율 = (당기 상시근로자 수/전기 상시근로자 수) × 100 - 100

※ 단, 선택 조건 ③, ④는 제출 대상 연도의 경기도 중소기업 통계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음.

- 2) 신청 제외대상은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가)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나)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라)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마)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바)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사) 대기업 · 중견기업
 - 아)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이나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과제 진행) 중인 기업
 - 차) 경기도 스타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2016~2022), 글로벌강소기업 1,000+(지정단계 : 강소, 강소+, 2023년 이후),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 플러스 기 선정 기업
 - 카) 동일 년도에 글로벌 강소기업 1,000+(강소, 강소+), 소부장 기업 육성 지원사업,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사업 중 2개 이상 사업에 중복 선정되었을 경우 신청기업은 해당 년도에 1개 사업만을 택하여 수혜받아야 함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 악화 기업의 경우 바), 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다. 신청분야 및 지원조건

1) 신청분야 : 3개 분야 9개 세부과제 지원

지원 분야	세부 추진 과제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등) 개발 지원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포장, 통합 디자인 개발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PCT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제품규격인증 획득	국내외 신규 제품규격인증 지원
	기술사업화	1. 시장정보분석 : 특허동향, 시장현황 등 2. 기술사업화자율과제 : 보유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개선, 개량 활동 3. 기술사업화컨설팅 :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비용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홈페이지, 홍보 인쇄물(브로셔, 카탈로그 등), 포스터, 이북(e-book), 전문잡지 등
	국내외 전시회참가	국내외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
스마트 혁신	온택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광고, 플랫폼 입점 등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등

2) 지원조건

가) 지원금은 총 소요비용의 70% 이내로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지원한도 초과액은 해당 기업이 부담한다.

(1) 도비 매칭 투자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 시군비)

(2) 이외 시·군 소재 기업은 기업 당 42백만원 이내 지원(도비)

나) 상기 지원금은 예산 현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지원금 한도 내에서 지원항목에 대한 횟수 및 분야 제한은 없음

라) 협약기간 내 완료할 수 있는 과제에 한함

마) 공통 지원제외 항목

(1) 내부직원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경비성 비용

(2) 대행기관이 해외인 경우

단, 해외전시회,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의 경우 해외 대행기관 허용

(3) 협약 전 완료된 과제 비용

바) 지원금 지급의 대원칙

(1) 표준단가 존재(단가표 또는 비교견적서 제출)

(2) 자산성 및 양산용 기자재 불가

(3) 인건비 제외

(4) 투명한 정산 가능 항목

라. 신청 및 접수

1) 신청 절차

가) 신청서류 양식은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www.egbiz.or.kr)를 통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신청기업 대표는 사업 공고문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사업주관기관에 사업 계획서 및 제출서류 등을 기한 내 제출한다.

다) 신청은 접수마감일까지 사업주관기관 홈페이지(www.egbiz.or.kr)에 온라인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신청이 유효하다.

2) 제출서류

가) [서식 제1호] 참여신청서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1부

나) [서식 제2호] 과제추진계획서 한글파일, 직인 날인된 스캔본(PDF) 각 1부

다)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

라)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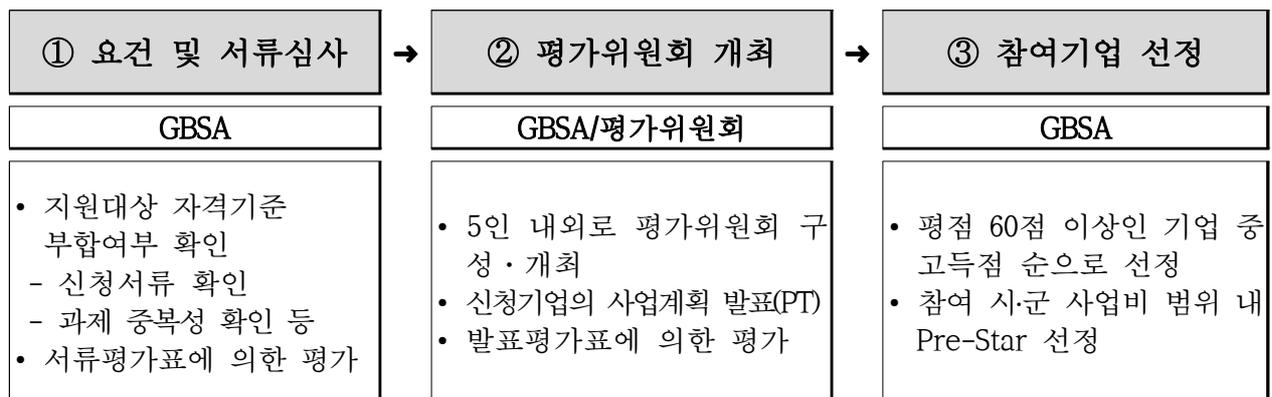
마) [서식 제5호]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바) [서식 제6호]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협약서 1부
- 사)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 아)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증서 사본 1부
- 차) 3개년 확정재무제표 각 1부
- 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개년 12월 귀속분, 세무서 발행본) 각 1부
- 타)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7. 평가 및 선정

가. 선정절차

사업주관기관은 과제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적격업체에 한하여 평가위원회에 상정한다.



나. 요건 및 서류심사

- 1) 요건 및 서류심사는 [서식 제70호] 요건 점검표 및 [서식 제71호] 서류평가표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평가한다.
 - 가) 공고에서 제시한 요건의 충족 여부
 - 나) 신청자격 조건 충족 여부, 제외대상 및 제출서류 확인
 - 다) 가산점 서류는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는 경우 인정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가산점 적용기준 및 대상>

- NET / NEP 인증기업 (인증서)
 - 국내·외 규격인증(UL, CCC 등 인증별 1점, 최대 3점) 보유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기업 (인증서) 2점
 -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 (확인서)
 -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운영) 입주기업 (확인서)
 -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사업 참여기업(중기애로과제 기업에 한함) (참여확인서)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참여확인서, 협약서)
 - 여성기업 인증기업 (인증서)
 - 친환경인증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성과공유제 종합관리시스템 www.benis.or.kr 에서 발급)
 -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이사장 또는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의 장으로부터 과제확인서 발급
 - 장애인 기업 (확인서)
 -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인증서)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보유기업 (확인서)
 -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인증서)
 -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지정서)
 - 경기도 ESG 진단평가 (평가서)
 -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 ※ 상기 인증별 각1점, 최대 10점 인정, 단 경기도 유망중소기업은 2점

- 2) 사업주관기관은 신청서류에 대한 검토결과 내용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업에게 서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3) 사업주관기관은 사업계획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였거나 신청제외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4) 요건 심사 부합되는 기업 중 서류평가(40점) 및 가산점(10점) 합산 결과 선정규모 2배수 이내 발표평가 상정

다. 발표평가

- 1)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가)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한다.
 - 나) 신청기업과 경쟁 또는 이해관계에 있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서식 제73호]의 서약서에 서명을 받는다.
 - 다) 평가위원회를 원활히 진행하고,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사업주관기관의 업무담당자 1인이 간사로 참석한다.

라)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평가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사업주 관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단, 사업총괄기관 또는 사업주관기관에 소속된 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위원회 등 실비보상기준>

구 분	지급액	지급기준
평가, 심사 등의 회의 참석수당	200,000원	- 기본 : 2시간 이내 기준 - 기준시간 초과시 매시간 시간당 단가(기본지급액의 50%)추가지급(일일 최대 지급한도 400천원)

2)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평가는 신청기업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의 발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나) 평가위원회는 사업 계획서, 발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식 제72호] 발표 평가표에 의거 평가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발표평가 평가표>

구분	세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사업기간 내 완료 가능성, 제품 콘셉트 및 설계의 완성 정도, 과제계획 및 일정의 실현 가능성	15점
기술성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 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 개발, 기술개발인력	15점
사업성	미래 시장성·성장성 마케팅능력	시장 전망, 경쟁 강도, 시장 지위, 제품경쟁력, 매출 성장성, 미래 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 안정성, 경기도 전략산업 여부*	15점
기대효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내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경기도 전략산업 여부*	10점
윤리경영	윤리경영 및 사회적 책임 등	인권 및 고용 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 개발(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5점
합 계			60점

※ 경기도 전략산업 : 글로벌 산업(반도체, 미래자동차 산업), 미래성장동력 산업(정보통신, 영상기술, 데이터, 바이오산업), 지식기반서비스 산업(ICT 산업)

다) 발표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의 산술 평균(소수이하 2자리에서 반올림)을 평가점수로 산정한다.

$$\text{발표평가점수} = \frac{\text{평가위원의 점수 합계}}{\text{평가위원수}}$$

라) 사업주관기관은 신청기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위원회에 불참하거나 대표 또는 과제책임자가 발표를 하지 않은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라. 선정 및 통보

- 1) 사업주관기관은 최종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한해, 예산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 순으로 참여기업을 선정하여 이를 통보하고, 협약과 관련한 사항 등을 안내한다. 지원금 한도는 예산에 따라 조정 될 수 있다.

$$\text{최종점수} = \text{서류평가(40점)} + \text{발표평가(60점)} + \text{가산점(10점)}$$

- 2) 공고일 기준 2년 내 11개((1)공정거래법 (2)하도급법 (3)표시광고법 (4)근로기준법 (5)산업안전보건법 (6)폐기물관리법 (7)대기환경보전법 (8)소음진동관리법 (9)물환경보전법 (10)국세기본법 (11)지방세기본법) 중 범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 고발 확정 판결 내역이 확인되는 기업은 최종점수의 20% 감점 적용하여 최종점수를 산정한다. 단, 범위반 사실이 아래의 유예대상 47개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 「범위반 행위 치유 이행각서」(서식 제7호) 제출 시 감점을 적용하지 않는다.

<범위반 적용법률 세부내용>

적용법률		내 용
I 공정	① 공정거래법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
	② 하도급법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原事業者)와 수급사업자(受給事業者)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 균형발전
	③ 표시광고법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
II 노동	④ 근로기준법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기여

적용법률		내 용
	⑤ 산업안전보건법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
	⑥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기여
Ⅲ 환경	⑦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
	⑧ 소음진동관리법	공장·건설공사장·도로·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 소음·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⑨ 물환경보전법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危害)를 예방,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물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Ⅳ 납세	⑩ 국세기본법	국세, 지방세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 과세(課稅),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기여
	⑪ 지방세기본법	

〈법위반 적용 유예대상 47개〉

구분	법령	법위반 행위
1	공정거래법	• 지주회사 설립 불성실신고
2	공정거래법	• 주식소유 현황 또는 채무보증 현황 불성실신고
3	표시광고법	• 공정위 조사에 불출석
4	근로기준법	• 노동위, 근로감독관에 대한 불성실 보고
5	근로기준법	• 법령 등 주요 내용 게시 의무 위반 (취업규칙 등에 관한 열람보장 위반)
6	근로기준법	• 사용증명서 발급 위반 (미발급)
7	근로기준법	• 근로자명부 작성 위반 (미작성)
8	근로기준법	• 계약서류 보존 의무 위반 (계약서류 미보존)
9	근로기준법	•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작성의무 위반 (대장, 명세서 미작성)
10	근로기준법	• 연소자 증명서 비치 위반(미비치)
11	근로기준법	• 취업규칙의 작성 신고 (취업관련 규칙의 신고 미이행)
12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지도사 등록, 등록갱신 미이행
13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보증보험 미가입 등 필요조치 미이행
14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지도사의 직무 수행 중 작성한 서류 등에의 기명 날인 서명 미이행

구분	법령	범위반 행위
15	산업안전보건법	• 중대재해 사실의 불성실 보고
16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 대표 참여 의무 위반 (근로자대표 참여 배제)
17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 발생 불성실 보고
18	산업안전보건법	• 위생시설 설치장소 미제공 및 시설 이용 비협조
19	산업안전보건법	• 휴게시설 미설치
20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불이행
21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위반
22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책임자 지정 위반 (책임자 미지정)
23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관리 규정 작성 위반 (미작성)
24	산업안전보건법	•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25	산업안전보건법	• 근로자 대표의 참석의무 미이행
26	산업안전보건법	• 불성실 보고
27	폐기물관리법	• 전용용기제조업 등록 불성실 신고
28	폐기물관리법	• 불성실 신고 보고를 통해 적합성 확인 구득
29	폐기물관리법	•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장비에 관한 불성실 신고
30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의 인계·인수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 불성실 입력
31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불성실 신고
32	폐기물관리법	• 장부기록사항을 전자정보프로그램에 불성실하게 입력
33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의 불성실 작성
34	폐기물관리법	• 유해성 정보자료를 수탁자에게 미제공
35	소음진동관리법	• 타이어 소음도 측정 결과의 불성실 신고
36	소음진동관리법	• 변경신고의 불성실 신고
37	소음진동관리법	• 생활소음·진동이 발생하는 공사의 불성실 신고
38	소음진동관리법	• 소음허용기준 위반 운행자의 개선사항 불성실 보고
39	소음진동관리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실시
40	물환경보전법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시작 불성실 신고
41	물환경보전법	•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의 불성실 신고
42	물환경보전법	• 비점오염원 설치의 불성실 신고
43	물환경보전법	•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의 불성실 관리
44	물환경보전법	• 공유수역 관리 규정의 미이행
45	물환경보전법	• 폐수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의 불성실 입력
46	물환경보전법	•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미시행
47	지방세기본법	•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의 성실신고 방해 행위

- 3) 선정 규모 내 동점인 경우 발표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발표 점수가 동점인 경우 가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
- 4) 예비(후 순위) 기업 10개사 내외 규모로 선정하며 경기도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추가 선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既선정기업 포기 시 예비기업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단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한다.
- 5) 참여 시·군 지원예산 범위 내 추가선정이 가능할 경우 경기도 스타기업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시·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지원금 한도는 조정될 수 있으며, 총점 60점 미만 기업은 제외한다.
- 6)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 계획서의 수정·보완 또는 사업비 조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은 선정 결과를 통보받은 후 1개월 이내에 선정결과(사업비, 추진일정 등)가 반영된 협약서 및 [서식 제2호] (수정)과제 계획서, 기타 관련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한다.
- 7) 예비지원대상자의 유효기간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8. 협약 및 지원금 지급

가. 협약 준비

- 1) 참여기업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내 협약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2) 참여기업은 사업비관리 전용통장(참여기업명)을 개설하고 기업부담금 중 사업비 총액의 30% 이상 현금을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업주관기관에서 지정한 날짜에 협약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협약서류 목록〉

번호	서류명	작성방법
1	협약체결 및 선금지급 신청서	- [서식 제10호] 작성
2	협약서	- [서식 제11호] 작성
3	과제추진 계획서(요약)	- [서식 제14호] 작성
4	과제추진 (수정)계획서	- [서식 제2호] 작성
5	전용통장	- 사업비 전용계좌 사본(지원기업 명의 보통예금 통장) ※ 신규개설하거나 유희계좌를 잔액 0원으로 맞춘 후 사용
6	인감증명서	- 협약서 날인과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추가 제출
7	기업부담금 입금증	- 기업 부담금(현금)을 납입한 통장내역 사본 첨부

8	이행보증보험증권	-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보증보험사 발행) 1) 보증기간 : 지원결정일 ~ 익년 4월 마지막날 2) 보험가액 : 지원금 총액 ※ 이행보증증권 발급수수료는 지원금액에 포함되며 사후 정산 시 반영 ※ 증권은 보증기간 동안 유지
9	청렴이행 서약서	- [서식 제12호] 작성
10	정보 활용 동의서	- [서식 제13호] 작성
11	단위과제별 제출서류	- 해당 단위 과제별 제출 서류

※ 제출방식 등은 추후 사업주관기관이 지정

※ 해당 단위 과제별 제출 서류는 [별첨 1. 단위과제별 운영기준] 자료 참고

- 3) 협약서류 중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의 계약기간은 지원결정일로부터 익년 4월 마지막날까지로 하고, 가입금액은 지원금으로 한다.
- 4) 협약기간은 선정 결과 통보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 5) 연내 추진한 과제에 한해 14아래와 같이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
 - 가) 사업신청 시 제출한 [서식 제2호] 과제추진 계획서에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 나) 협약 체결 이전에 완료된 과제의 경우 소급 지원 불가
 - 다) 과제신청서 승인 및 협약 체결 후 기 지출비용을 기업관리통장으로 이체
 - 라) 단, 협약 전 완료된 과제의 경우 소급 불가
- 6) 대행기관 선정 관련 지정 Pool은 없으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한다. 단,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에 관련 업종이 표시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이는 사업주관기관의 해석을 따른다.

나. 협약 체결

- 1)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 가) 협약기간
 - 나) 참여기업 대표
 - 다) 사업비 조성
 - 라) 성과활용 및 자료 제출
 - 마) 협약 변경 및 해약

- 바) 협약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사) 기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2) 사업주관기관은 협약체결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의 70%를 참여기업 사업비 관리 전용통장으로 입금한다.
- 단, 사업비 통장에 기업부담금 미입금시 선금을 미지급하며, 단위 과제 완료 후 지원금 신청시 결과물 검토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3)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
- 가) 협약 전 참여기업이 사업수행을 포기한 경우
 - 나) 사업주관기관이 평가결과에 따라 요구한 사항을 수정·보완하지 않은 경우
 - 다) 기업부담금을 지정기한 내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마) 기타 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
- 4) 참여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협약 체결이 중지된 경우 사업주관기관은 우선순위의 예비지원대상자에게 협약체결 대상으로 통보한다.

다. 협약의 변경

- 1) 참여기업은 추가과제 신청, 소요비용 변경, 대행기관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관기관에게 [서식 제40호] 협약변경 신고서에 의하여 협약의 변경은 1회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다. 단, 협약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신청분에 한한다.
- 2) 사업주관기관은 변경사항 및 점검결과를 검토한 후 협약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여기업에게 협약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 3) 협약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신청해야한다.
- 가) 기 신청(승인) 과제별 소요예산(지원금+기업부담금)이 30%이상 증가 또는 감소(또는 취소) 하는 경우
 - 나) 기 신청(승인) 과제별 소요예산이 1,000만원 이상 변경 될 경우
 - 다)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라) 추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4) 협약 변경 요청 시 제출 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제출방식
추가과제 신청시	[서식 제40호] 협약변경 신고서	추후 사업주관기관 지정
	[서식 제14호] 과제추진 계획서(요약)(수정)	
	단위과제 신청시 제출서류	
소요비용 변경시	[서식 제40호] 협약변경 신고서	
	[서식 제14호] 과제추진 계획서(요약)(수정)	
	견적서	
대행기관 변경시	[서식 제40호] 협약변경 신고서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5) 상기의 사항에 대해 협약변경 신고 없이 추진 할 경우 제재사항에 해당되어 추후 스타기업 우대사항(글로벌강소기업 신청 시 가점 등)에 대해 제한이 있으므로 반드시 협약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라. 협약의 해약

사업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업(과제)을 계속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참여기업에게 협약의 해약을 요청할 수 있다.

- 1) 참여기업이 사업신청대상 이외지역 (경기도 이외)으로 이전한 경우
- 2) 천재지변, 참여기업의 부도·법정관리·폐업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3)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각종 보고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된 경우
- 4)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 5) 과제수행이 중단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고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참여기업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중대한 협약위반, 관계규정 위반 등으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7) 사업주관기관은 상기 1)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때에는 중단과제로 처리하고 참여기업에게 통보한다.

- 8) 사업주관기관은 참여기업의 중대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지원금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형적 발생품 환수,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마. 지원금 지급

- 1) 사업주관기관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일시 지급한다.
- 2) 참여기업은 지원금 수령계좌가 변경될 경우 즉시 사업주관기관에게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 3)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경영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 4) 지원금 활용 관련 단위과제별 운영기준은 <별첨 1>을 적용한다.

9. 중간점검

가. 중간점검

- 1) 사업주관기관은 과제 1/2시점에 참여기업 대상 [서식 제51호] 자체점검표(1)를 제출받고 현장 점검을 실시 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중간점검 서류>

번호	서류명	작성방법
1	자체 점검표	- [서식 제51호] 작성
2	사업비 통장내역	- 입출금내역 엑셀

- 2) 기술사업화 자율과제의 경우 해당하는 전문가를 2명 내외로 선임하여 기업 현장방문을 통하여 [서식 제52호] 자체점검표(2)로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가) 사업주관기관은 선임된 전문가의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계속”, “중단”, “조기완료”, “보류” 등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 (1) 계속 : 계획된 개발목표를 성실히 달성하고 개발성공 가능성이 인정되며 계속적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중단 : 사업비를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및 기업이 부도, 폐업된 경우, 개발목표 달성정도가 부실한 경우, 기업 경영악화 등으로 인해 사업성이 불투명한 경우, 사업비의 관리 및 집행정도가 불성실한 경우

(3) 조기완료 : 해당 사업의 최종목표가 조기에 완료되어 계속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4) 보류 : 별도의 기술적 판단이 필요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경우

나) 사업주관기관은 중간점검 결과, “보류”,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계속”, “중단”으로 판정하고,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다) 중간점검 결과의 처리

사업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10. 사업정산 및 점검

가. 사업정산

1) 참여기업은 과제 종료 후 15일 이내에 [서식 제60호] 과제결과보고서 및 정산 서류를 사업주관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정산서류>

번호	서류명	작성방법
1	과제 결과보고서	- [서식 제60호] 작성 ※ 별첨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증빙서류 ※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사업 전체금액(전체과제)을 기준으로 작성
2	지원성과 설문서	- [서식 제61호] 작성
3	사업비 통장내역	- 입출금 거래내역(엑셀파일)
4	완료서류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진행시) [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 - (기술사업화 컨설팅) [서식 제25호][서식 제26호]

2) 참여기업은 발생이자를 포함하여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 3) 사업주관기관은 제출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의 집행이 불량한 경우 보완, 환수, 제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현장점검

- 1) 사업주관기관은 아래와 같은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가) 시제품개발(금형) 과제 신청시
 - 나)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신청시
 - 다) 기타 완료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2)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과제의 경우 해당하는 전문가를 2명 내외로 선임하여 기업현장방문을 통하여 [서식 제62호] 완료점검표 의거 점검하고 아래와 같이 관리한다.
 - 가) 점검결과를 종합하여 “성공”, “실패”, “보완” 등의 3등급으로 평가한다.
 - (1) 성공 : 사업목표를 계획대로 성실히 달성한 경우
 - (2) 실패 : 사업목표를 계획대로 달성하지 못한 경우
 - (3) 보완 : 최종 사업목표를 일부 달성하지 못했으나, 보완을 통해 달성이 가능한 경우(단, 1회에 한함)
 - 나) 사업주관기관의 평가결과가 ‘실패’인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하며, 사안에 따라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 다) 사업주관기관은 평가결과가 ‘보완’인 경우 참여기업에게 기일을 정하여 해당 자료 등을 보완할 것을 요청하여 성공여부를 결정하며,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위원회는 “성공”, “실패”로 판정하고, “실패”로 평가된 과제는 사안에 따라 제재등급을 기준으로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확정한다.
 - 라) 완료점검 결과의 처리
사업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평가결과와 조치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 사업비 정산결과 처리

- 1) 지원금의 잔액은 사업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지원금 잔액} = \frac{(\text{최종잔액}) \times \text{지원금}}{(\text{지원금} + \text{기업부담금})}$$

※ 최종 잔액 = 현금 총액 - 적정 집행금액

※ 현금 총액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발생이자

- 2) 이자발생액을 포함하여 반납해야 할 지원금 잔액을 사업비 부담 비율(도비-시비-자부담)로 나누어서 각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반납 불필요, 반납금액은 만원 미만 단위 절사한다.
- 3) 사업주관기관은 참여기업에게 지원금 잔액, 납부계좌 및 납부기한을 통보하여야 한다.
- 4) 지원금 잔액 반납통보를 받은 참여기업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원금 잔액을 사업주관기관이 지정한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 5) 사업주관기관은 지원금 잔액 반납 통보 후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취한다.
- 6) 지원금 납부 및 제재 조치 결과는 경기도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1. 제재사항 및 환수

- 1) 동 사업 운영지침에 의한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실패 등에 대하여 제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래의 표를 기준으로 세부적인 제재여부 및 제재대상을 결정하고 제재사유가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재대상에 대하여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 2) 아래와 같이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이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하며, 제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다.
 - 가)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 나) 과제추진 완료보고서 및 주관기관(GBSA)에서 요청할 수 있는 중간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 다)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 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바)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거나 우리 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법에 위배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참여제한 제재등급>

구분	세부내용	참여제한	환수범위
중단 · 포기	• 지원기업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포기 또는 자료제출 요구에 불이행 하는 경우	1년	선정취소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수행을 중도 포기 하는 경우	3년	전액환수
	• 사업기간 중 경기도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등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전액환수
	• 수행과제의 목표 달성 미흡 등 수행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하여 중단·실패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수행과제를 성실히 수행하였으나 기술성 및 사업성이 미흡하여 중단·실패 할 경우	면제	면제
	• 중단의 귀책사유가 해당기업에 없다고 인정된 경우 - 정부의 산업기술정책상 중단 또는 협약 해약된 경우 - 타 기관의 기 개발 또는 타 사업으로 기 지원 등의 사유로 중단된 경우	면제	면제
협약위 반	• 중대한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선정제의 사유 등이 발견된 경우	3년	전액환수
	•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협약서 상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이행한 경우	3년	전액환수
	• 고의로 사업비를 사용 목적 외 집행한 경우. 다만, 용도 외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에 해당 금액이 사업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환수범위를 감경(완화)할 수 있음.	3년	전액환수
부당수 취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이상인 경우	영구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인 경우	5년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 부당수취액이 1천만원(누계액) 미만이지만 그 전액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영구	전액환수 및 고발고치
누설 · 유출	• 보안관리,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1년	-
	•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평가 또는 수행내용을 누설·유출한 경우	3년	전액환수

3) 조치사항

가)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발 조치할 수 있으며, 「형법」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진흥원장은 지원수혜자에게 변상책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해당사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부정·부당 편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지원금의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조치사항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거나, 기타 관련법에 따른 부정행위의 적발 시 부당수취액의 금액,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하여 향후 지원사업 참여를 최대 영구배제할 수 있으며, 그 사실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2. 시행일

이 운영지침은 경기도에서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의 세부사업 계획안을 승인한 날(2026. 2)로부터 시행한다.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단 위 과 제 별 운 영 기 준

목 차

번호	구분	서 식 명	PAGE
1	제품 혁신	시제품개발 지원	1
2		디자인개발 지원	2
3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3
4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4
5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지원	7
6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지원	8
7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9
8	시장 개척	홍보판로개척 지원	11
9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12
10	스마트 혁신	디지털 전환 지원	13
11		온택트 홍보판로 지원	14

1 시제품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시제품(금형, 워킹목업) 개발·제작 지원

< 원가분석 후 지원금액 결정 >	
○	주관기관(GBSA)이 지정한 원가분석기관을 통하여 제작비용에 대한 원가분석 실시
○	원가분석결과와 견적가와 차이가 5% 미만의 경우 원가분석 결과를 미반영
○	원가분석결과와 견적가와 차이가 5% 이상인 경우 원가분석결과를 반영하여 소요비용의 70% (VAT 제외) 이내에서 지원금액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참여기업의 경영·자금난 등으로 인해 과제추진이 중단될 경우에는 현장실태조사 후 개발된 단계까지의 비용을 정산 처리할 수 있음.
- 완성 금형 Mold base에 하기의 내용으로 각인 필수(불가할 경우 명판부착)

기업명	(주)0000
명칭	000제품 Upper case
제작일 / 완료일	00년 00월 00일 / 00년00월00일
대행기관	(주)0000
지원사업명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육성사업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서식 제21호] 견적서, 세부시행계산서 4.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완료시	1. 원가분석 결과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4. (설계 변경시) 금형제작도면(또는 제품 3D모델링) 5. 금형완료 사진

2 디자인개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에 완료되는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디자인 : 신규 디자인개발, 기존 생산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시각 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re-design) 위주
- 포장 디자인 : 제품박스, 포장 등 신규 및 리디자인(re-design) 등
 - ☞ 홈페이지·카탈로그는 제외 (홍보판로개척 분야로 신청)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제품+시각, 시각+포장, 제품+포장+시각 등

○ 유의사항

- 대행기관 선정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대행기관 선정
 -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 > 디자인DB 조회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4. 견적서(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완료시	1. 디자인개발 결과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디자인 : 렌더링 이미지 - 시각디자인 : 매뉴얼 - 포장디자인 : 결과물 이미지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3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취득한 국내·외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 지원대상 : 해외특허(PCT 포함),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 지원항목 : 관납료, 심사료, 번역료, 대행기관 수입료, 선행기술조사비 등

○ 참고사항

- 협약기간 내 획득한 지식재산권 과제만 지원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해당 기업 내 출원/등록 당사자 개인명의로의 산업 재산권 출원/등록은 지원 제외
- 산업재산권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 제외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완료시	1. 출원/등록 통지서 및 출원서/등록서 사본 ※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 2. (번역료/선행기술 조사비 청구시) 번역/선행기술 조사 결과물 3. 전자세금계산서 4. 관납료/심사료 영수증 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4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 지원내용 : 신규로 취득한 국내·외 제품규격 인증 지원

○ 유의사항

- 협약기간 내 획득한 규격인증 과제만 지원
- ISO, OHSAS, HACCP 등 시스템인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CoC 및 DoC 가능하며 관련 인증서, 시험결과물 제출 필수

구 성	내 용
인증비용	승인서발급수수료, 인증심사비, 인증기관 시험비용
시험비용	대행기관 또는 실험인증기관에서 시험한 비용만 인정
컨설팅비용	대행기관 컨설팅 비용 : 인건비, 기술자료제공비, 기타비용 (숙박비, 식비, 기타경비 등 제외)

[참고 1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참고 2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ISO17025) 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 능력을 보유해야 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완료시	1. 인증서, 시험결과물, 컨설팅 결과물 사본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참고 1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p>【북미/남미】 AAR(미국철도협회) ABS(미국선급협회) ACMI AP(미국창착재료협회) AGA(미국가스협회) AMECA(미국 자동차 안전 부품 인증) ANMAT(아르헨티나 의료기기 인증) ANSI(미국규격협회)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ANSI/BHMA(미국 건축 제품 인증) ANSI/BIFMA(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ANVISA(브라질 식품의약품 인증) API(미국석유학회) ASME(미국기계학회)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CSA(캐나다표준규격) CTI(미국냉각탑협회, 미국 열성능)</p>	<p>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편법) DOT(미국운수성) Energy 스타(미국 에너지스타)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N(미국 식품 접촉물질(재료) 등록제도) FDA(미국식품의약품국)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Gold Seal(미국 음용수관련 인증) HC(캐나다의료기기인증) IAPMO(미국배관자재 환경인증) IC(캐나다통신규격) ICC-ES Evaluation Reports (미국 건축 자재 관련 제도)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NCHRP(미국고속도로시설물연구프로그램)</p>	<p>NIJ(미국고속도로시설물연구프로그램)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PC(미국위생도기구격) NMMA(미국 요트 보트 트레일러 관련인증) NOM(멕시코 제품안전규격)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NSF(미국위생규격) PTCRB(북미휴대폰 인증) TC(캐나다 위험물질 운송 인증)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UL(미국보험자협회안전시험소) USCG(미국해양안전관련 규제) WHI(북미지역 건축자재인증) WQA(미국수질협회) 3-A(미국 낙농 및 식품가공기기 인증) COFETEL(멕시코통신인증)</p>
<p>【아시아】 ADR(호주 자동차 안정 및 배기량 규격) ARAI(인도 자동차 협회) ARTC(대만자동차 및 부품인증) AS(호주규격협회)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AQSI(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BAA(일본자전거 안전 기준) BIS(인도제품인증) BSMI(대만표준규격) CCC(중국필수인증) CCS(중국선급인증) CNS(대만국가표준) CSEL(중국 보일러 및 압력용기 인증)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CQC(중국 제품안전 자율인증) F☆☆☆☆(일본친환경규격) F-mark(일본전기용품 및 부품) GOST-K(카자흐스탄 인증)</p>	<p>HK-STC(홍콩품질 및 검정센터) JAS(일본농림규격)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JIS(일본표준규격) JPAL(일본의료기기 규제법) KUCAS(쿠웨이트 제품적합인증) MOH(중국보건부인증) MPHPT(일본 우정 통신성) NAL(중국통신인증) NEPSI(중국 방폭관련인증) NIM(중국계량과학원) NK(일본선급협회)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PSB(싱가폴생산성표준원) PSC(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RS(러시아선급협회) RTN(러시아 연방 유해산업시설 인증) Russia Hygienic 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p>	<p>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 QAS)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SFDA(중국국가식약품감독관리국)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S-mark(일본안전규격)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SRRR(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 인증) TGA(호주 의약품 규제 기관) TRA(인도 및 티벳지역 농자재 인증)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Water Mark(호주 배관제품인증) WELS(호주 물 효율 라벨링 제도) 소방안전 증명서(러시아) 일본 ECO 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위생허가 중국계량과학원 중국수입참가제 등록 중국위생허가</p>
<p>【유럽】 AENOR(스페인규격협회)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BBA(영국전자재인증) BSI BS EN489(유럽 열(히트) 파이프 지침) BSI(영국표준협회) BV(프랑스선급협회) CE(유럽공동체마크) CEB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DIN(독일규격협회) DNV(노르웨이선급협회) Eco-Labeling(EU 환경마크)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ESV(유럽 위성지구국 관련인증)</p>	<p>EU 2092/91(EU의 유기농식품 인증) EU Directive 76/768/EEC(유럽 화장품유해물질 규제지침)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GL(독일선급협회)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KTW test certificate(독일 식수관련인증) LFGB(독일식품용품법) LGA(독일 바이에른 공업시험청) GOST(러시아표준규격) GS(독일품질안전) GTT(프랑스 GTT 선급)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LRI(영국선급협회)</p>	<p>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NF(프랑스표준규격)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유럽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RoHS(유럽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SEMI(유럽 반도체장비 인증)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SP(스웨덴 국립시험연구협회) TUV(독일기술관리협회)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WRAS(영국수질협회인증)</p>
<p>【기타 국제규격】 AEM(장비제조/서비스에 대한 국제무역협회 인증) ALE 1.0(RFID 제품 인증) ATP(부패성음식 수송적합승인)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BQB(블루투스제품호환성확보목적인증) BSMI(표준검험국)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 시험인증) FTC(화염시험 국제인증)</p>	<p>KOSHER(유대교 식품적법인증) IECEx(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GOTS(국제유기농 섬유 국제규격) HALAL(이슬람음식 및 영양협회) HDMI(PC와 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 표준) MPR2(전자파측정 및 검사 국제규격) NFPA1971(가연성제품화재방지 국제규격)</p>	<p>NOP(유기제품 인증) NPC(소음공해 규제기관)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PCI(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국제규격) SINCERT(고압 전기제품 및 부품 인증) TCO05(정보사무기기 효율 국제인증) Toxproof(환경유해물질 안전마크) WPS(선급용접절차승인)</p>

※ 상기 외 기타 규격인 경우는 별도 지원여부를 결정

【 참고 2 】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대상

[KS (한국산업규격)]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정수기의 검사 및 등록 제도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제도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고압가스용 제품 안전검사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

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

[그 외 법정강제인증]

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

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택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

[법정임의인증]

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

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

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상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

[민간인증]

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올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가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쌍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

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으뜸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헌품 품질인증
ASP인증

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항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클센타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

※ 상기 외 기타 규격인 경우는 별도 지원여부를 결정

5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지원

○ 지원내용 : 기술특허·산업시장·기술시장 정보분석,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 기술특허 정보분석

- 지원내용: 국내외 기술개발 및 특허동향 분석을 통해 향후 기술의 전개방향 예측한 분석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특허출원, R&D과제 도출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기술개요, 기술특성,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주요 연구자 현황, 국내외 특허출원 동향, 주요 출원인 현황, 향후 기술개발 방향 전망 등

- 산업시장 정보분석

- 지원내용: 국내외 산업시장 DB 조사와 필드 서베이를 통해 관련 시장 현황, 시장 전개방향 및 수요예측 정보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시장진입전략, 판매전략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시장 개요, 특성, 외부환경분석, 시장규모, 시장성장성, 시장구조, 업체동향, 시장점유율, 수요예측 등

- 기술시장 정보분석

- 지원내용: 전문가 자문과 필드 서베이를 통해 국내외 기술개발 동향, 산업시장 현황 및 기술시장 전개방향과 수요예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R&D과제 선정, 시장진입전략, 판매전략 수립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
- 분석내용: 국내외 기술개발동향, 국내외 특허출원동향 등 기술특허분석, 시장개요, 특성, 규모, 성장성, 수요예측 등 산업시장분석

- 기술가치평가

- 지원내용 : 기술성, 시장성 및 권리성 분석을 바탕으로 보유기술의 향후 창출 가능한 가치를 평가하여 금액으로 제시함으로써, 벤처에 대한 투자 여부 결정 근거자료로 활용 또는 기술이전 및 거래계약시 기술가격 산정 기준으로 활용

- 사업타당성 평가

- 지원내용 : 신기술 및 아이디어를 대상으로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업화 성공 가능성과 투자 수익성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확률 제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완료시	1. 최종 결과물(책자, 파일)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6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사업화의 정의 : 보유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일련의 활동 즉 기술사업화 활동을 지원
- 이미 개발된 기술에 대한 응용·개량 및 사업화를 위한 계획·실험·평가 등

○ 지원대상

- 개발된 기술의 응용 및 개량 활동
- 개발된 기술을 이용한 사업화 기획, 기술기획 활동
- 사업화 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술평가
- 사업화 성공률 제고를 위한 경제성 분석, 비즈니스모델 수립, 양산화 및 투자계획 수립, 판로개척, 마케팅, 시장진출시 전략 등 사업화 전략 수립
- 기타 기술사업화 자율과제(기업 여건에 맞춘 자율과제)

○ 비목별 계상기준

- 세부항목의 비용은 다른 분야의 제한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상
- 인건비 제외
- 정보 활동비 : 시장 정보 분석 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계상
- 기자재 구입 및 임차료는 총 사업비의 20% 한도 내에서 구입
- 연구개발 및 제품생산에 필요한 기자재로 사무용 기자재(PC, 사무용 책상, 케비넷 등) 계상불가

○ 유의사항

- 시제품 중 금형, 목업 제작의 경우 과제분야 중 ‘시제품개발’ 로 지원
- 지식재산권 획득 및 제품규격인증의 경우 과제분야 중 해당 분야로 지원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4. [서식 제22호] 과제 세부일정 및 사업비 산정내역
완료서	1. [서식 제23호][서식 제24호]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보고서 2. 용역업체 및 구매처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거래명세서, 제품사양서 등 제출 ※ 증빙자료 추가요청할 수 있음 4. 전자세금계산서 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7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을 통하여 지역의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지원) 기술사업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기술사업화컨설팅 지원
 - 기술사업화 검증(사업타당성, 비즈니스모델 다각화) 지원
 - 기술사업화 전략 수립 등 컨설팅 지원
- (혁신인증 지원)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증획득 지원
 - 기술(경영)혁신형 인증, 기업부설연구소, 부품소재전문기업 인증
 - 녹색, 그린 인증 등

○ 유의사항

- 컨설턴트는 GBSA 기업SOS넷 전문가(인력풀) 또는 전문 대행기관 활용
- [참고 3] 컨설턴트 등급별 자격 및 수당기준을 준용한다.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컨설턴트 이력 및 경력증명 서류 ※ 기업SOS넷(www.giupsos.or.kr)에 등록된 경우 미제출
완료서	1. [서식 제25호] [서식 제46호] 완료보고서 2. [서식 제27호] 지도일지(일자별 사진자료 포함) 3. 컨설팅 결과물 4. 전자세금계산서 5.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 참고 3 】

컨설턴트 등급별 자격 및 수당기준

등급	주요자격 및 경력	일일수당	비고
A	1.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부교수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의 이사급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20년 이상 일반실무경력자 6. 기타 일정경력을 갖춘 경영 및 기술전문가로서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300,000	
B	1.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전임강사 이상 3.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기술사, 세무사, 관세사 등 국가공인자격을 취득하고 3년 미만 실무경력자 또는 기사자격을 취득하고 7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또는 컨설팅전문회사 대표자 등으로 자격취득 후 5년 미만 실무경력자 5. 민간기업 과장이상으로서 10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6.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250,000	
C	1. 연구기관의 연구원급 이상 2. 대학 시간강사 이상 3. 민간기업의 5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기타 지원센터가 인정하는 자	200,000	

- 컨설턴트의 등급은 위표의 자격요건에 맞추어 산정
- www.giupsos.or.kr에 등록되어있는 컨설턴트는 등록되어있는 등급을 준용.
 ☞ 미등록되어 있는 컨설턴트는 자격요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 일일 수당은 8시간 기준으로 산정함.(4시간인 경우 일일수당의 1/2적용)

5 홍보판로개척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완료되는 국내·외 홍보판로개척 지원

- 국내외 발행되는 분야(업종)별 전문 신문/잡지 광고 게재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 및 홈페이지 제작
- 기업·제품의 홍보책자, (전자)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인쇄물 제작

○ 유의사항

- 홍보판로개척 지원은 참여기업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홍보 및 기업소개에 대한 내용만 지원 대상으로 함.
- 홍보물 인쇄비가 포함되었을 경우 납품 당시의 사진(홍보물이 보일 수 있도록 상자는 개봉하되 홍보물을 상자에서 꺼낼 필요는 없음), 거래명세서 첨부
- TV, 라디오 광고 : 광고 비용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표준단가 제출가능 과제에 한해서 신청 가능)

○ 지원대상 제외

- 사보 등 기업 내부에서만 활용하는 홍보물
- 동영상물 제작이 목적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콘텐츠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완료시	1. 최종결과물 - 신문/잡지 광고, 홍보인쇄물 : 결과물 원본 (우편송부) -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브로셔 : 결과물 파일 - 납품 사진 ※ 사업비에 인쇄비 포함 시 2. 전자세금계산서 3. 거래명세서 ※ 사업비에 인쇄비 포함 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6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 지원내용 : 기업의 특성에 맞는 국내·외 전문·지역특화 전시회 참가 지원

○ 지원대상 제외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과 같이 전시회가 주행사가 아닌 경우
- 경기도, 시·군, 타 기관 등을 통해 중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 유의사항

- 전년도 선지출한 전시회 계약금의 경우 협약 이후 개최하는 전시회의 경우 비용 인정
- 해외 전시회의 경우 해외 대행사 인정

○ 지원금 지급 기준

항 목		세부내역	첨부서류
주최측 제공	부스료	○ 기본/독립 부스 임차료	○ 계약서 (전시회참가 신청서 대체가능) ○ 세금계산서 (주최측 발행) ○ 온라인 입금 영수증 (해외송금시 외화송금증 및 외국환거래계산서) ○ 전시회 및 부스 전경(3매 이상)
	기 본 장 치 비	○ 전기 / 전화 / LAN(전용선) ○ 고객관리용 기기 / 압축공기 ○ 기타 전시회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전시물품 운송료		○ 선박/항공 운송료 (10CBM 이내) ※ 지원금 산정시 운송료는 참가비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함.	○ 운송사 발급견적서 ○ 운송비 입금 영수증, 지출증빙
부스설치		○ 독립부스	○ 장치사 발급견적서 ○ 장치비 입금 영수증, 지출증빙
지원 제외사항		○ 광고비(디렉토리 등) ○ 홍보물 제작비 (배너, 현수막 등)	○ 항공료, 숙박비 등 경비성 비용 ○ 대행기관이 제공치 않는 기타 비용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전시회 주관사 사업자등록증 ※ 국내 전시회 또는 해외전시회 국내 대행기관 활용 시 1, 2 제출 ※ 해외 전시회는 2 제출 2. 전시회 참가비용 내역서(견적서, 계약서, 인보이스 등) 3. 전시물품 운송(견적서, 입금영수증, 지출증빙 등)
완료시	1. 결과 이미지(부스, 전시장 사진) ※ 전시회 명칭, 기업명 표시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10 디지털 전환 지원

○ 지원내용

- 디지털을 기반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산업 구조에 대응하기 위한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등 지원

○ 지원대상

- 진단비 : 디지털 전략, 업무 프로세스, IT 인프라 등 DX 수준 진단비
-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비
- 데이터 분석 : 디지털 전환을 위한 데이터 분석 등 분석비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완료시	1. 최종 결과물(책자, 파일) 2. 전자세금계산서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11 온택트 홍보판로 지원

- 지원내용 : 사업기간 내 완료되는 온택트(Ontact) 홍보판로 지원
 - CPC, 배너광고, 온라인플랫폼 입점, 인플루언서 광고 등 온라인 홍보 과제
- 유의사항
 - 홍보판로개척 지원은 참여기업이 직접 제조·판매하는 제품홍보 및 기업소개에 대한 내용만 지원 대상으로 함.
- 지원대상 제외
 - 사내에서 운영하는 온택트 매체를 활용하는 홍보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민간 인플루언서 광고
-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신청시	1.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3. 견적서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일 경우 비교견적서 첨부 必)
완료시	1. (대행기관에서 제공하는) 결과/성과 보고서 2.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인보이스 3. 온라인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입금증 사본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과 제 서 식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목 차

구분	서식번호	서 식 명	PAGE
신청	서식 제1호	신청서	1
	서식 제2호	과제추진 계획서	4
	서식 제3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2
	서식 제4호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13
	서식 제5호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4
	서식 제6호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15
	서식 제7호	법위반 행위 치유 이행 각서	16
	서식 제8호	법위반 사실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7
협약	서식 제10호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18
	서식 제11호	협약서	19
	서식 제12호	청렴이행 서약서	22
	서식 제13호	정보활용 동의서	23
	서식 제14호	과제추진 계획서(요약)	24
단위 과제	서식 제20호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25
	서식 제21호	시제품개발 견적서	27
	서식 제22호	과제 세부일정 및 사업비 산정내역	29
	서식 제23호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보고서(요약)	30
	서식 제24호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보고서	31
	서식 제25호	기술사업화 컨설팅 완료보고서(요약)	32
	서식 제26호	기술사업화 컨설팅 완료보고서	33
서식 제27호	컨설팅 지도일지	36	
변경	서식 제40호	협약변경 신고서	37
중간	서식 제50호	자체점검표	38
	서식 제51호	중간점검표(1)	39
	서식 제52호	중간점검표(2)	40
완료	서식 제60호	과제추진 완료보고서	41
	서식 제61호	지원성과 설문서	62
	서식 제62호	완료점검표	63
평가	서식 제70호	요건점검표	64
	서식 제71호	서류평가표	65
	서식 제72호	발표평가표	66
	서식 제73호	평가위원 서약서	67

1) 소재지역(시군)

- 소재지는 본사기준으로 하되, 참여 市 소재를 우선으로 작성(공장이 참여 市 소재라면 공장소재지를 작성)

- ex. 본사(경기 용인), 공장(경기 화성)일 경우 경기도 용인시 기재
- ex. 본사(경기 안양), 공장(경기 화성)일 경우 경기도 화성시 기재
- ex. 본사(서울), 공장(경기 화성) 일 경우 경기도 화성시를 기재

2) 기업현황 작성 년도

- 신청연도 - 2 (ex. 2026년 경우 '2026-2 → 2024'로 계산, 2024년 자료로 작성)

3) 업종(표준산업분류)

- 공고문 붙임 '표준산업분류표'에서 해당하는 업종을 찾은 후 기재 둘 이상의 다른업종을 영위할 경우 매출액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표시

4) R&D 투자액

- 연구개발투자액 및 연구개발투자비율은 아래의 기준에 의하여 확인
- o 기업회계기준서(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

재무제표	계정과목	연구개발비 해당금액	비고
①재무상태표	무형자산의 개발비	당해연도 개발비 총 증가금액 (=당기말 개발비-전기말 개발비+개발비상각비)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등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인정하는 금액 이외의 금액은 제외
②포괄손익계산서	판매비와관리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손익계산서 금액	상동
③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의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제조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④기타원가명세서	연구비, 경상개발비 또는 (경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기타원가명세서의 금액	상동

※ 해당연도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되는 금액의 예시

- 연구개발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중 당해 연도 감가상각비 이외의 금액(즉, 연구개발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전액이 취득연도의 연구개발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 연구개발비 중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해당연도 이외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
- 기타 기업회계기준서에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이외의 금액

5) 직간접수출액

- 수출실적은 직수출과 기타 수출(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로 합하여 작성
- 직수출 실적은 한국무역협회(www.kita.net) 및 한국무역통계진흥원(www.trass.or.kr) 발급자료에 의하여 확인·증명
-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에 의한 수출은 주거래 외국환은행장이 발행한 증명서로 확인

6) 상시종업원수

- 상시종업원수 = 상시근로자수 + 연구개발인력수

- 상시근로자수 : 전년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명기된 '간이세액' 인원
- ※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4.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
 - * 매월 또는 반기별 신고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매월 근로자 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통해 기업의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7) 연구개발인력수

- 연구개발인력수는 연구소 또는 전담조직에 속한 인력

8) 연구인력비중

- 연구인력비중 = $\frac{\text{연구개발인력수}}{\text{상시종업원수}}$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과제 추진 계획서

20 년 월 일

주관기업	(인)
대표자	(인)

1. 기업현황

가. 기업연혁

구분(예시)	주요 사업전략 및 성과	성공 또는 실패요인 분석
창업단계 (‘00~’00)		
시장진입 단계 (‘00~’00)		
성장단계 (‘00~’00)		
안정화단계 (‘00~’00)		
현재		

나. 기업소개

○

-

-

다. 인력현황

합계	기획· 관리직	연구개발직	영업직		생산직	기타
			국내	해외		
0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기업연혁**
 - 기업의 성장단계를 창업단계, 시장진입단계, 성장단계, 안정화 단계 등으로 구분(현재 성장수준에 따라 성장단계 구분)하여 단계별 주요 성장전략 및 성공, 실패/위기 극복 사례 등을 제시
 - 성장단계별 기업 주요 연혁, 수상실적(기술개발, 수출, 인증) 등도 기재
- **기업소개**
 - 주력기술, 제품, 기업의 특징점, 설립배경 등 자사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작성

2. 사업현황

가. 주력사업(제품) 및 핵심기술 보유현황

○

-

-

○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번호	구 분	지식재산권명	출원·등록번호 (년월일)	보유자	비 고
1					출원
2					등록
:					

나. 시장현황

○

-

-

다. 주요 매출처

번호	구 분	매출처	품목	비중	거래기간
1	내수	OO자동차	변속보조장치	50%	30개월
2	수출	OO모터스	무단변속기	30%	12개월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주력사업(제품) 및 핵심기술 보유 현황

- 소개된 주력사업(제품) 및 핵심기술의 개념, 용도, 특성, 사용처, 특징점, 특허보유현황 등을 제시
- 특허보유현황
 - 최근 3년 이내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기재
 - 구분은 특허, 실용신안, 의장·상표, 프로그램 등록, 기타 등으로 기재
 - 공동보유인 경우 보유권자명을 모두 기재
 - 비교란에는 “출원” 또는 “등록” 구분 기재

○ 시장현황

- 해당 사업군(제품군)의 시장상황, 주력시장 기재
- 시장 및 수요층의 규모, 시장규모 대비 자사비중, 성장가능성, 경쟁업체, 자사의 경쟁력 (SWOT, 3C 등 분석기법 및 정량적 지표 제시)

○ 주요 매출처

- 2025년 기준으로 작성

라. 윤리경영

○ 산업재해율 현황

산업재해율	
자사	동종업계

○ 인권 및 고용평등

-
-

○ 인력개발

-
-

○ 사회공헌 활동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윤리경영

- 산업재해율 현황 : 최근 1년 산업재해율 확인서 기준으로 작성 (발급처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인권 및 고용평등(남녀평등, 장애인고용비율, 비정규직 고용비율 등), 인력개발(인적자원 투자비율(교육훈련비율) 등), 사회공헌활동(지역 자원봉사, 사회공헌 관련 수상기록 등) 등을 기재

3. 과제 개요

가. 과 제 명 :

나. 과제 개요

○

-

-

다. 기술특징

○

-

-

라. 지원필요성 및 현재개발 수준

번호	항목	지원 필요성 및 현재개발 수준	
		필요성	개발 수준
1	시제품개발	필요성	
		개발 수준	
2		필요성	
		개발 수준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명**
 - 관련기술과 도입된 제품을 기재
 - 예시. 개발목적+적용대상+개발수준 - 000기술의 000 개선을 위한 AAA용도의 A제품, BBB용도의 B제품 사업화
- **과제개요**
 -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 과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기재(개조식으로 작성)
 - 예시 : 시장개척만 진행 예정 - 홍보제품군에 대한 기술적인 원리와 제품을 소개하고 홍보방안을 기재
- **기술특징**
 - 지원대상 기술(제품)의 경쟁력, 우수성 및 비교우위, 활용도(사업화 가능성) 등
- **지원필요성 및 현재개발 수준**
 - 필요성 : 제품의 효용성, 개선필요성, 개선방향, 개선목적 등 각 신청과제에 대해 왜 지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기재
 - 개발수준 : 제품개발단계나 홍보컨셉설정 등 단위과제별 진척도를 작성
 - 예시 : (금형) 설계까지 완료, 21년 5월 금형제작 착수
(규격인증) 자체테스트완료, 21년 6월 외부기관테스트 및 9월 CE 인증획득

마.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월	월	월	월	월	월
1. 예)디자인개발	■	■					
2. 예)시제품개발			■	■	■		
						■	

바. 최종목표 및 개발결과

번호	항목	최종목표 및 개발결과
1	시제품개발	
2	디자인개발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Bar-Chart로 표시
 - 세부 추진일정의 추진내용은 과제 당 1줄씩 작성
- 최종목표 및 개발결과
 - 협약기간동안 실현가능한 목표 설정, 내용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작성
 - 예시 : 시제품 제작 완료, 기존 제품의 ○○○ 기능 보완, 국내 마케팅을 통한 매출 ○○○원 달성
 - 해당과제의 범위(수량, 인증명, 출원건수, 전시회참가명, 홍보물 등 과제관련 내용) 및 결과물의 활용범위(사업화계획)

사. 기대효과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매출 예상규모]					
	구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매출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일자리창출 예상규모]					
구분	직전년도	당해년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종업원수(명)						

아.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시장 상황 분석	○ ○	
마케팅 전략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기대효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은 시장창출, 수입대체,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수출기대, 비용절감, 매출액,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과제 완료 후 활용방안
 - 개발상품과 관련된 목표시장의 시장상황(시장규모, 유사제품 유무, 차별성, 경쟁력 등)에 대해 기술. 객관적 데이터 분석 지향
 - 개발상품 판매 전략, 예상 구매자 규모(예정된 계약, 바이어 요구 등 구체적 수치로 기술), 상품화 자금 확보 방법 및 규모, 상용화 예상시기 등 상세히 서술

4. 사업비 구성

가.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지원금(70%)	기업부담금(30%)	비고
원	원	원	

나. 예산사용 계획

(단위 : 원)

번호	항목	과제개요	소요금액
합계			1,250,000
1	시제품개발		
2	디자인개발		
:			
:			
:			
필수	이행보증보험		450,000
필수	위탁회계정산		800,000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사업비 구성

- 참여(매칭) 시·군 소재 기업은 최대지원금 76백만원, 그 외 시군은 최대지원금 38백만원
- 작성 시 반드시 지원금 한도 확인 필요
- ※ 참여(매칭) 시·군 : 성남, 화성, 용인, 시흥, 평택, 군포, 여주, 이천, 파주, 안성, 과천, 연천

○ 예산사용 계획

- 항목은 시제품 개발, 디자인개발, 지식재산권 획득, 제품규격인증 획득,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기술사업화 시장정보분석, 기술사업화 컨설팅, 홍보판로, 국내외전시회 참가, 스마트공정개선, 온택트 홍보판로, 디지털 전환 중 기재
- 과제개요는 과제 내용이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
 - 시제품 개발 예시 : 신제품 ○○○ 빔포인터 제작 관련 목업 제작
 - 홍보판로 예시 : ○○○ 빔포인터 홍보를 위한 브로셔 제작
 - 스마트공정개선 예시 : 빔포인터 제작 공정 중 버튼 오류로 인한 불량률 제고를 위한 공정개선
- 소요금액은 부가세 제외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수수료는 도 지원금액 총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여 기재(보험기간 12개월) 예시) 도지원금 76백만원일 경우 : $76,000,000 \times 0,00588(\text{표준요율}) \times 1.0(\text{보험기간 12개월}) = \text{약}450,000\text{원}$
- 위탁회계정산 : 도지원금이 76백만원일 경우 800,000원, 38백만원일 경우 500,000원으로 필수 책정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서

목적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진흥원에서 운영중인 홈페이지 회원가입, 민원처리, 중소기업 지원사업, 의견 수렴, 업무홍보 등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③ (개인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아이디, 비밀번호, 이메일, 거주지주소, (휴대)전화번호
- ④ 필요 시 기업(또는 대표자)의 과태료 이상 처분사항 조회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경기도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신용)정보는 수집 · 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보유·이용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회원가입(지원사업신청)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당해업무 수탁자에게 제공하고 수탁업체는 수탁 받은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활용시는 고지하고 필요한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지원사업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정책 수립, 집행, 결과 확인, 만족도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한하여 진흥원의 다른 부서, 경기도 및 진흥원의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 등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이 경우 원활한 서비스제공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에 동의합니까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지원요건 준수 확인서

목적

-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신청요건과 더불어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의 참여를 선제적으로 제한함으로써 ‘공정한 기업지원’ 환경을 활성화하고자 함.

제외요건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또는 대표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인 경우 및 전산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② 최근 1년간 11개(①공정거래법 ②하도급법 ③표시광고법 ④근로기준법 ⑤산업안전보건법 ⑥폐기물관리법 ⑦대기환경보전법 ⑧소음진동관리법 ⑨물환경보전법 ⑩국세기본법 ⑪지방세기본법) 중 범위반 내역이 있는 기업
 - ③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④ 자본잠식 및 금융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
 - ⑤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⑥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⑦ 재무제표 선택 연도(20년 또는 21년) 기준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 이 500% 이상이거나 유동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기자본) × 100
 -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 ⑧ 재무제표 선택 연도(20년 또는 21년) 결산 기준 자본을 완전히 잠식한 경우
 - ⑨ 대기업 · 중견기업
 - ⑩ ‘11~**25년**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 기업
 - * 2017년까지의 사업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G-STAR기업육성프로젝트
 - ⑪ 공고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⑫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사항으로 타 사업에 참여중인 기업
 - ⑬ 재무제표확인일 기준 평가 후 확정재무제표 확인을 통해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 ⑭ 월드클래스 300, 16년 ~ **25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선정 기업
 - * 동일년도에 스타기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동시 선정 불가로 중복 선정되었을 시 스타기업이나 글로벌 강소기업 중 택1 必
- ※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⑦, ⑧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재해중소기업확인증’ 등)를 제출해야 함.

위 사항에 대해서 해당이 되지 않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제외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 부과되는 선정(또는 협약)취소 처리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귀하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2. 개인정보 수집 기관 :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기업(단체)명, 기업(단체) 사업자등록번호, 기업소재지(주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소재지),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범위반사실확인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범위반 사실확인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은 당해연도 사업 종료 시까지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제공 목적	기업경영활동 중 발생한 범위반사실 확인
제공 항목	기업(단체)명,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제공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 (환경부, 관할 도·시군 환경부서)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5. 기타사항 : 상기 목적 이외에는 개인정보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 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기업의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약약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지정폐기물허가업체 해당 여부(한강유역환경청)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비해당)			
2. 법위반 사실 확인 및 유의사항			
법위반 여부 사실 관계 확인사항		위반사실 없음	위반사실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관할 시군 환경부서, 도 환경부서, 한강유역환경청)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세무서, 시군)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제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위반사실 확인)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기준 고시 관련 위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의사항 고지 및 안내		동 의	부 동의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으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보조금 반환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보조금 환수, 3년 이내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됨을 고지 받고 이에 동의합니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p>공고문 및 신청 유의사항 등 관련내용을 확인 하였으며,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따라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6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font-weight: bold; font-size: 1.2em;">(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p>			

이의 및 구제 신청서

1. 개인 및 기업 수집 정보

기업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대 표 자 성 명		생 년 월 일	

2. 신청요지

관 련 법 령	
법위반 처분내용 (처 분 기 관)	
법위반사실 개요 (경위 및 사실관계)	

3. 소명내용

4. 증빙서류 : 법위반처분서류 및 소명자료(증빙)

스타기업 육성지원사업 사업대상자 선정 평가 시 법위반 처분사실에 따른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신청서

문서번호 (내부 문서번호 기재)

시행일자

경 유

수 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참 조 성장지원팀장

제 목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요청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행과 관련한 협약 체결 및 동 협약에 의한 지원금 수령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서류를 제출합니다.

1. 신청인 정보

기업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2. 사업비

총 사업비 (A+B)	지원금 (A)	기업부담금 (B)
원	원	원
지원금 지급 요청		원
기업부담금 입금현황	입금일 (20)	원

3. 사업비 계좌 정보

은행명(지점)	계좌번호	예금주

- 첨부 1. 협약서 2부
2. 사업화과제 계획서(요약) 및 (수정)계획서 각 2부
3. 이행보증보험증권(원본) 1부
4. 기타 관련서류 각 1부

(사업비통장 사본, 기업부담금 입금증, 인감증명서, 대행기관 참여확인서,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견적서 등)

주 관 기 업 명 대 표 (직인)

2026년도 스타기업육성사업 협약서

- 사업명 : 2026년도 스타기업육성사업
- 사업목표 : 기술력이 뛰어나고 성장의지와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선택과 집중』 지원함으로써 경기도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창출

- 총사업비 : 금 _____ 원(금 _____ 원)
- 경기도 지원금(이하 '도 지원금') : 금 _____ 원 금 _____ 원
- 시·군 지원금 : 금 _____ 원 금 _____ 원
- 참여기업 부담금(이하 '부담금') : 금 _____ 원 금 _____ 원

※ 경기도 및 시 지원금은 각 지역에 예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협약당사자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기관'이라 함)
_____ (이하 '기업'이라 함)

위 사업의 수행에 관하여 '기관'과 '기업'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 다 음 -

제1조 (목적) 이 협약은 「스타기업육성사업」의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26. 10. 31.로 한다.

제3조 (사업비 조성) 총사업비는 도 지원금, 시·군 지원금, 기업부담금 등으로 구성하며,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한다.

제4조 (지원금 지급) ①기업은 각종 비용지출 증빙자료를 포함한 협약서 및 요구자료를 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예산 사정에 따라 제1항에 규정된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성과 활용) ①기관은 본 사업의 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내역 등 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업은 사업현장 점검 및 관련 서류의 열람에 응하여야 한다.

②기업은 본 사업 이후 3년 간 성과활용 조사에 응해야 한다. 조사에 불응할 경우 경기도 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6조 (자료 제출) ①기업은 지원분야별 추진계획서를 제출하여 기관으로부터 지원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기관은 제출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이 기관의 자료제출 및 제출자료 보완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과제는 중단 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협약 변경) ① 기업은 사업계획서 내용(기술, 제품 등)을 기반으로 과제 협약을 하며 협약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기관과 기업이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기업은 과제진행 중 기술 및 제품 등에 추가 지원수요가 있을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기업당 지원금 한도까지 지원금을 증액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기업의 내부사정으로 과제 소요비용이 감소할 경우 지원금을 감액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기업은 당초 사업계획서에 계상된 사업비 대비 30%이상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거나,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 변경될 경우, 사전에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협약 해지 및 통보) ①기관은 기업이 사업목적을 현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기관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과제를 포기하거나, 부도 또는 파산 등 기업 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지속적인 과제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2. 과제수행이 정지 상태에 있거나 성과목표 달성을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과제추진 중 경기도 이외 지역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4. 과제추진 중 시군 예산을 지원받은 경우, 해당 시군 이외 지역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5. 과제추진 중 공고에서 정한 신청자격에서 벗어났거나 지원제외대상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 경우
6. 기타의 이유로 과제의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기업은 제2항의 협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비 반환 및 참여제한 조치) ①기업이 협약기간이나 사후에 아래 각 호와 같이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제8조에 의해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기관은 지원금 전액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대해 즉시 응하여야 한다.

1. 사업비를 유용·횡령하는 등 사업 외 목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2. 과제수행 결과보고서 및 주관기관에서 요청할 수 있는 중간보고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또는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사업수행 관련 자료 및 결과를 위조, 변조,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를 수행한 경우
6.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 도지사 또는 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가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거 기관이 요청한 지원금 반환에 대하여 기업이 지연 또는 거부할 경우 기업과 보증보험사 간 협약된 이행보증보험 협약사항에 따라 조치하며, 진흥원을 포함한 도내 유관기관 지원사업에 대하여서도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항목은 스타기업육성사업 운영지침, 진흥원 규정 및 관련법에 따른다.

제10조 (성과물 활용) ① 본 사업 수행과정을 통해 개발된 성과물은 기업의 산업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기관과 기업 간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업은 당해 성과물의 지식재산권, 간행물 게재, 홍보 및 전시회 출품 등의 대외 발표 시에는 「스타기업육성사업」을 통해 지원을 받은 성과물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기관은 본 사업 성과물에 대한 홍보나 그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의 사업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안) 기관은 본 사업 수행과정을 통해 취득한 모든 기밀사항을 기업의 승인 없이 대외적으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 (기타) 본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기관이 「스타기업육성사업 모집 공고」, 「스타기업육성사업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사항은 본 협약서 상의 내용으로 간주한다.

제13조 (해석) ①본 협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협약에 관한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②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기명날인 후 기관과 기업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 장 (인)

(참여기업) (인)

청 립 이 행 서 약 서

당사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청과제와 관련하여 정부 및 타 지원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이번 과제가 이미 완료된(개발, 생산 및 판매) 과제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또한 당사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고,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납품업체 등과 담합하여 가격을 임의로 조정하거나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본 사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받지도 않겠습니다.
3. 당사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시행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4. 당사는 귀 기관의 심사와 객관적 절차에 따른 선정 및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당 사업의 정책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동일·유사분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함을 확인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등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지원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환수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을 약속합니다.

위 내용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서약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 등 불이익 처분이 있음을 확인 합니다.

20 년 월 일

스타기업육성사업 수행 과제는 중복과제가 아님을 확인하며, 중복과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참여제한 등 불이익처분에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자필기재)

기 업 명 : (인)

대 표 자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중소기업 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③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지원이력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 ②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 ③ (재무정보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품목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④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 ④ (지원이력)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중소기업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수집·이용 기간

- 사업자가 사업 신청시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 이후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 운영 종료시까지
 -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수집범위 : 신청 및 수혜기업의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5년까지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파기

- ① (파기대상)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② (파기절차 및 방법)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하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필수 등록 사업으로 확정될 경우에만 제공하며, 미등록 사업일 경우에는 제공하지 않음
 ※ 본 동의서식이 동의서 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미동의 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20 년 월 일

기업명 ○ ○ ○

대표자 ○ ○ ○ (인)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과 제 추 진 계 획 서(요약)**

과제명 :						
번호	신청과제		예상 일정	대행기관		소요금액 (부가세 제외)
	중분류	소분류		대행사	사업자번호	
사업비 계						
1	시제품개발	금형	2026.4.1. ~11.31	과제요약	휴대용 미용기기(TQ-1) 시제품(3벌) 제작	
2	홍보판로 개척	브로셔	2026.5.1. ~8.30	과제요약	휴대용 미용기기(TQ-1) 홍보 카달로그 제작	
3	전시회참가	국내	2026.11.12 ~11.14	과제요약	홍콩 미용박람회(Cosmoprof) 전시회 참가	
				과제요약		
				과제요약		
				과제요약		
				과제요약		
				과제요약		
필수	이행보증보험					
필수	위탁회계정산					

작성요령

1) 신청과제

- 중분류, 소분류 항목 확인 후 작성

소분류에 원하는 과제가 없는 경우 담당자의 협의 후 작성 가능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비고
제품혁신	시제품 개발	금형	
		목업	
	디자인개발	제품	
		시각	
		포장	
		통합디자인	
	지식재산권 획득	해외특허	
		PCT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제품규격인증 획득	상표	
		국내규격	
	기술사업화	해외규격	
		시장정보분석	
자율과제			
시장개척	홍보판로	컨설팅	
		동영상	
		홈페이지	
		카탈로그	
		브로셔	
		리플렛	
		이북(e-Book)	
	포스터		
	국내외전시회 참가	전문잡지	
		국내	
해외			
스마트혁신	온택트 홍보판로	배너	
		CPC	
		인플루언서 광고	
		플랫폼 입점	
	디지털 전환	진단	
		시스템 및 플랫폼 구축	
		데이터 분석	

견 적 서

To : _____ 업체명 : _____
 Model : _____ 대 표 : _____ (인)
 금형/No : _____
 금형명 : _____
 작성일 : 20 . _____

하기와 같이 시행내역서를 제출합니다.

시 행 내 역

N O	공 정 명	수 량	시행금액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TOTAL				

- 1. 부가세(V.A.T)는 별도임
- 2. 제작기일 : 제작일로부터 _____ 일
- 3. 유효기간 : 제출일로부터 _____ 일
- 4. 세부시행계산서 : 별지 첨부

REMARK

※ 제품설계 또는 금형설계 도면을 반드시 첨부할 것

세부시행계산서

금형 NO.		금형명		공정명				
제 품 재 질		No	주재료 명	수량	재 질	중 량	단 가	금 액
금 형 Size		1						
		2						
		3						
금형구조도(별지작성가능)		4						
		5						
		6						
		7						
		8						
		9						
				부재료명				
M/MODEL비								
Pattern 비								
비								
[B]TOTAL		[A] TOTAL						
No	가공비항목	가공시간	단가/시간	인원	금 액	제조경비(D)	(B+C) ×10 %이내	
1								
2								
3						제조원가(E)	A+B+C+ 제조경비	
4						일반관리비(F)	제조원가 ×10%이내	
5						이 윤(G)	제조원가 ×10%이내	
6						견 적 금 액 (E+F+G)		
7						비고: 자체 제작금형의 경우 A+B+외 주가공비만 인정. ※ 특기사항		
8								
9								
10								
11								
12								
13								
14								
15								
[C] TOTAL								

과제 세부일정 및 사업비 산정내역

과제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스마트 공정개선
-------------	---

1. 추진일정

세부일정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2. 사업비 산정내역

- 사업비 조성

분담내역	계(100%)	지원금(70%이내)	기업부담금(30%이상)
사업비(천원)			

- 비목별 사업비

	세부항목	산출근거	금액(천원)	증빙
직접비 (100%)	- 외주용역비			
	- 실험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료			
	- 정보 활동비			
합 계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 보고서(요약)

과 제 명																											
기 업 명		대표자 성명																									
전 화 번 호		과제책임자 성명																									
총 개 발 기 간																											
개발사업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10%;"></th> <th style="width: 40%; text-align: center;">세부항목</th> <th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금액(천원)</th> <th style="width: 20%; text-align: center;">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5"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직접비 (100%)</td> <td style="text-align: left;">- 외주용역비</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실험재료비</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기자재 구입비</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기자재 임차료</td> <td></td> <td></td> </tr> <tr> <td style="text-align: left;">- 정보 활동비</td> <td></td> <td></td> </tr> <tr>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합 계</td> <td></td> <td></td> </tr> </tbody> </table>				세부항목	금액(천원)	비 고	직접비 (100%)	- 외주용역비			- 실험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료			- 정보 활동비				합 계		
	세부항목	금액(천원)	비 고																								
직접비 (100%)	- 외주용역비																										
	- 실험재료비																										
	- 기자재 구입비																										
	- 기자재 임차료																										
	- 정보 활동비																										
	합 계																										
대행기관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완료 보고서

I. 기술사업화자율과제 완료 보고서(목차) - 자유양식

II. 기술사업화자율과제 완료 보고서(본문) - 자유양식(목차에 맞추어 작성)

제 1장. 기술사업화 개요

제 1절. 기술사업화 배경 및 필요성

제 2절. 국내외 관련 기술의 현황

제 3절. 기술사업화로 예상되는 효과성

제 2장. 기술사업화자율과제 추진현황 및 결과

제 1절. 목표 및 평가방법

제 2절. 추진단계별 세부내용

제 3절. 추진결과

제 3장. 사업화 계획 및 성과요약

제 1절. 사업화 계획

제 2절. 기술·경제적 성과

(기술적 성과, 경제적 성과, 지식재산권 성과, 학회 참가, 사업화 성과 및 매출실적, 사업화 전략, 고용창출 효과 등)

기술사업화 컨설팅 완료 보고서(요약)

지 도 명				
대상기업		대표자	(인)	
지도분야				
담당 전문위원	소속			
	성명	(인)		
지도기간(일수)	. .	~	. .	(일)
컨설팅비용	총 비 용 :		원	
	업체부담금 :		원	
	진행원부담금 :		원	

기술사업화 컨설팅 완료 보고서

1. 컨설팅 추진개요

대상기업명		대표이사	
소재지		주생산품	
지도명			
지도기간	2026. . . . ~ 2026. . . .	참석자	컨설턴트
지도일수			대상기업
지도분야		내용공개	<input type="checkbox"/> 가능, <input type="checkbox"/> 불가능
주요 컨설팅 추진내용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추진목적 및 필요성(추진배경, 추진목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주요 추진사항(방법, 과정, 개선결과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 ○ ○ ○ ○ ○ ○ 		
지도결과물 (첨부자료)	1. 지도일지 : 일 차분 2. 지도결과물 각 1부 3. 관련 자료 파일 제출		

2. 세부추진결과 현황

지도 단계	세부지도내용		지도유형	지도일수	지도결과물
현상 파악	○			일	
	○			일	
	○			일	
	추진일정		소계	일	
원인 분석				일	
				일	
				일	
	추진일정		소계	일	
대책 수립				일	
				일	
				일	
	추진일정		소계	일	
대책 실시				일	
				일	
				일	
	추진일정		소계	일	
점검 및 피드백				일	
				일	
	컨설팅 총평가 간담회		간담회	일	
	추진일정		소계	일	
총 추진일정			합계	일	

※ 주 1) '지도구분'의 항목은 변경하여 작성 가능합니다.

2) 지도일자별로 세부추진내용은 지도일지에 작성하여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현장컨설팅 지도결과물 및 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도유형 구분 : 현장지도(A), 면담·회의(B), 교육(C), 자료분석(D), 기타(E)

3. 컨설팅 수행효과 (자율양식 가능)

수행 전	수행 후
○	○
○	○
○	○
○	○
○	○
○	○

※ 기술컨설팅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지도 개선전후의 결과물 사진을 별도 첨부바랍니다.

4. 사후관리 및 기타

<input type="checkbox"/> 향후 대상업체의 사후관리 계획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추진시 애로사항 등

지 도 일 지

컨설턴트	(서명)	기업담당자	(서명)
지도일자	2026년 월 일 (일차)	장 소	
지 도 명			
지도단계	<input type="checkbox"/> 현상파악 <input type="checkbox"/> 원인분석 <input type="checkbox"/> 대책수립 <input type="checkbox"/> 대책실시 <input type="checkbox"/> 점검		
지도유형	<input type="checkbox"/> 현장지도 <input type="checkbox"/> 면담·회의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자료분석 <input type="checkbox"/> 기타		
대상기업 참 석 자			

■ 추진 내용

■ 별첨자료

컨설팅 사진(필수), 수첩 메모, 회의록 등 첨부

스타기업육성사업 자체점검표

조사현황

기업명	대표자	점검자(성명)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지원금

과제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VAT별도)

순번	지원분야	사업 예산	소요 예산	진도율 (%)	추진현황 (집행계획 및 부진사유)
1	제품규격인증	11,270	7,889	100%	규격인증 획득 완료
2	제품규격인증	12,990	9,093	100%	규격인증 획득 완료
3					
합 계		24,260	16,982	100%	

추진실적

자체평가

-

계획대비 부진사업 현황 및 대책(진도율 평균 50% 미만인 경우 작성)

-

붙임 : 사업비 통장 입출내역 사본 1부

스타기업육성사업 중간점검표(1)

(진도 점검용)

조사현황

기업명	점검일시	점검자(성명)	피 점검자(성명)
총 사업비		지원금	기업부담금

과제 추진 현황

(단위 : 천원, VAT별도)

순번	지원분야	소요 예산	지원금	기업 부담금	진도율 (%)	추진현황 (집행계획 및 부진사유)
1	제품규격인증	11,270	7,889	3,381	100%	규격인증 획득 완료
2	제품규격인증	12,990	9,093	3,897	100%	규격인증 획득 완료
3						
합 계		24,260	16,982	7,278	70%	

점검결과

○ 계획대비 부진사업 사유 및 대책(진도율 평균 50% 미만인 경우 작성)

-

○ 개선 및 추가지원 의견

-

○ 기타 의견

-

목 차

I. 과제 요약서

II. 과제 추진개요

1. 추진개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관련기술 현황
4. 국내.외 시장규모

III. 과제 추진내용 및 결과

1. 과제 추진목표
2. 과제 추진내용 및 결과

IV. 과제 추진성과 및 활용방안

1. 과제 추진성과
2. 과제 결과의 활용방안
3. 기대효과

[부록]

1.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 각종 증빙서류를 부록으로 작성 첨부하되 그 목록을 작성

1. 추진개요

가.

나.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나.

3. 관련기술 현황

가.

○

-

-

4. 국내외 시장규모

가.

○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참고하여 간략히 기재

III

과제 추진내용 및 결과

1. 과제 추진목표

번호	항목	최종목표 및 개발결과
1	시제품개발	
2		
:		

2. 과제 추진내용 및 결과

가. 추진일정별 계획대비 실적

추진내용		추진일정																							
		월				월				월				월				월				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 예)디자인개발	계획	■																							
	실적	■	■																						
2. 예)지식재산권	계획																								
	실적																								
3. 예)시제품개발	계획																								
	실적																								
	계획																								
	실적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의 목표

-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과제의 목표에 대한 최종 결과물의 달성도를 상세히 서술

나. 과제 추진내용 및 방법 (해당과제 부분만 작성)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별도양식 제출
- 시제품 개발

금형(목업) 제작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작금형(목업) 세트 수 : · 수정횟수 : · 수정부분 및 이유 : · 금형(목업)의 완성도 : · 금형(목업)의 만족도 : 등 제작한 금형(목업)과 관련된 내용 기재
마케팅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수 방향 : · 수출 방향 : 등 내수방법, 마케팅 방법, 수출방법 등 자세하게 기재

- 디자인 개발

개발배경	
개발방향 및 디자인컨셉	
개발결과 및 결과물 활용전략	

- 홍보판로개척

개발배경	
개발방향 및 제작컨셉	
개발결과 및 결과물 활용전략	

○ 지식재산권 획득

기술 개념 (기능, 특징 등)	
기술의 응용분야 및 기술 이용한 개발제품	
목표시장 및 경쟁자 분석	
마케팅 전략	
기존 기술과의 차별화 정도	

○ 제품규격인증 획득

인증규격 개요	
제품 및 시장환경	· 제품명 및 용도, 경쟁제품 대비 경쟁력, 주요 소비자 또는 수요처
컨설팅 내용	· 컨설팅 진행시 컨설팅 내용 명시

○ 온택트 홍보판로개척

운영내용	
효과/만족도	
활용계획	· 참여기업에 대한 컨설팅 내용, 규격획득과제 진행시 문제점 및 해결방법 등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전시회명		전시품목	
전시기간		전시장소	
전시회 참가 만족도			
마케팅 활용계획			
전시회 참가 성과 (양식 변경 가능)	총 Buyer		명
	A. 즉시 거래		명
	B. 거래 가능성 높음		명
	C. 지속 Follow-up 필요		명
	D. 불필요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I : 전시 비용 대비 수익률(판매, 계약 수익) : (____%) (계산식 : 판매·계약 수익 / 전시회 참가 비용) · 후속조치 사항 등(자유 기재) 		

○ 디지털 전환

과제개요 및 최종목표	
개념도 및 최종결과물	※ 디지털 전환 결과를 도식화하여 표현

다. 과제 추진결과

-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 별도양식 제출
- 시제품 개발

[금형(목업)명칭:]	[용도설명]
[금형(목업)명칭:]	[용도설명]
[금형(목업)명칭:]	[용도설명]

- 디자인 개발 / 홍보판로개척

개발 전	완성 제품이 없으면 개발 중 사진자료, 투시도 드로잉 상태나 유사 제품 사진자료 첨부도 가능함.
개발 후	최종 개발결과 이미지 삽입 (영상인 경우 이미지를 캡처하여 내용 삽입)

○ 온택트 홍보판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결과이미지
결과이미지 설명
결과이미지
결과이미지 설명

○ 디지털 전환

개선 전	
개선 후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 추진내용 및 방법**
 - 추진과제별 추진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실물사진 등 첨부)
 - 해당하는 추진과제만 작성, 미추진 내용 삭제
- **과제 추진결과**
 - 최종결과물 사진 및 기타 결과 DATA 등 기술
 - 최종결과물의 완성도 등에 대해 기술

IV 과제 추진성과 및 활용방안

1. 과제 추진성과

구 분	내 용																														
기술적 측면	○ ○																														
경제·산업적 측면	○ ○ [매출 예상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6년</th> <th>2027년</th> <th>2028년</th> <th>2029년</th> <th>2030년</th> </tr> </thead> <tbody> <tr> <td>매출액(백만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수출액(백만원)</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일자리창출 예상규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2026년</th> <th>2027년</th> <th>2028년</th> <th>2029년</th> <th>2030년</th> </tr> </thead> <tbody> <tr> <td>종업원수(명)</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종업원수(명)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종업원수(명)																															

2. 과제 결과의 활용방안

구 분	내 용
시장 상황 분석	○ ○
마케팅 전략	○ ○

3. 기대효과

○

-

작성요령 (제출시 삭제)

- 과제 추진성과
 - 기술적 측면과 경제·산업적 측면을 구분하여 서술
 - 기술적 측면은 당해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등을 서술
 - 경제/산업적 측면은 시장창출, 수입대체, 제품/브랜드 이미지 개선, 수출기대, 비용절감, 매출액, 일자리창출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 활용방안
 - 시장상황 분석, 마케팅 전략 등 본 결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기술
- 기대효과
 - 본 과제 활용으로 기대하는 효과에 대해 기술

「2026년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사업비 사용 실적 보고서

1. 사업비 구성

총 사업비 (100%)	지원금	기업부담금	비고
42,030,000원	29,421,000원	12,609,000원	

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2-1. 사업비 집행내역(요약)

(단위 : 원, %)

번호	중분류	소분류	계 획	실 적	집행잔액	집행률
총사업비			42,030,000	42,030,000	0	100
0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30,000	30,000	0	100
1	시제품개발	금형	10,000,000	10,000,000	0	100
2	디자인개발	제품	20,000,000	18,000,000	2,000,000	90
3	제품규격인증획득	국내특허	10,000,000	12,000,000	-2,000,000	120
4	제품규격인증획득	PCT	2,000,000	2,000,000	0	100

* 사후환급금(부가세, 관세 등)은 집행금액에서 제외

2-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단위 : 원)

번호	중분류	집행일자	집행내용	지급처	집행액
총사업비					42,030,000
0	이행보증보험증권	26.05.10	보증보험증권	○○보증보험증권사	30,000
1	시제품개발	26.05.10	계약금	○○금형	5,000,000
4	제품규격인증획득	26.07.10	등록비용	○○대행사	2,000,000
3	제품규격인증획득	26.07.20	등록비용	○○대행사	6,000,000
3	제품규격인증획득	26.07.20	시험인증비용	○○시험인증	6,000,000
2	디자인개발	26.09.10	디자인 비용 지출	○○디자인	18,000,000
1	시제품개발	26.10.10	잔금	○○금형	5,000,000

* 사업비 통장내역 순으로 작성

* 2-1. 사업비 집행내역의 번호와 2-2. 사업비 세부집행내역 번호 동일

* 작성예시로 빨간색을 사용하였으니 작성 후 검정색으로 변경

3.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3-0. 사업비 전용통장 거래내역(통장내역)

--

3-1.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회계정산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이행보증보험 증권			<input type="checkbox"/> 이행보증보험증권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소 계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회계정산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소 계		원		

3-2. 시제품개발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시제품개발			<input type="checkbox"/> 원가분석 결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제작도면	
			<input type="checkbox"/> 완료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3. 디자인개발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디자인개발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제작도면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4.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출원/등록 통지서	
			<input type="checkbox"/> 출원서/등록서 사본	
			<input type="checkbox"/> 번역/선행기술 조사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관납료/심사료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5. 제품규격인증 획득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input type="checkbox"/> 인증서	
			<input type="checkbox"/> 시험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컨설팅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6. 시장정보분석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시장정보분석 지원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파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7. 기술사업화 자유평가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제품사진				
기술사업화 자유평가			<input type="checkbox"/> 완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제품사양서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납품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검수조서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송금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사업자등록증		
			<input type="checkbox"/> 견적서		
			<input type="checkbox"/> 계약서		
			<input type="checkbox"/> 거래명세서, 제품사양서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납품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검수조서		
			<input type="checkbox"/> 영수증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송금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천원			

3-8. 기술사업화 컨설팅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기술사업화 컨설팅			<input type="checkbox"/> 완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지도일지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9. 홍보판로개척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홍보판로개척 지원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파일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10. 국내외 전시회참가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			<input type="checkbox"/> 결과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인보이스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또는 해외송금영수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11. 디지털 전환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디지털전환 지원			<input type="checkbox"/> 완료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파일	
			<input type="checkbox"/> 라이선스 구매증서	
			<input type="checkbox"/> 기술지원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설치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구동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파일	
			<input type="checkbox"/> 라이선스 구매증서	
			<input type="checkbox"/> 기술지원 협약서	
			<input type="checkbox"/> 설치확인서	
			<input type="checkbox"/> 구동 확인서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12. 온택트 홍보판로 지원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온택트 홍보판로지원			<input type="checkbox"/> 대행기관 결과 보고서	
			<input type="checkbox"/> 결과물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input type="checkbox"/> 인보이스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원		

3-2. 시제품개발

(단위 : 원)

구 분	품명	증빙번호	증빙서류명	비고
	결과사진			
시제품개발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충전커넥터 1</p> 	1-1	<input type="checkbox"/> 원가분석 결과	
		1-2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1-3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제작도면	
		1-4	<input type="checkbox"/> 완료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시제품개발	<p style="color: red; text-align: center;">충전커넥터 2</p> 	2-1	<input type="checkbox"/> 원가분석 결과	
		2-2	<input type="checkbox"/> 세금계산서	
		2-3	<input type="checkbox"/> 입금증	
			<input type="checkbox"/> 제작도면	
		2-4	<input type="checkbox"/> 완료 이미지	
			<input type="checkbox"/> 기타 ()	
소 계		20,000,000원		

증빙번호 1-1

파일명 : 1-1_원가분석.pdf

증빙번호 1-2

전자세금계산서				승인번호		202212021-103008000-803853900		
공급자	등록번호	1102-021-7020000	출시일상	등록번호	1102-021-7020000	출시일상		
	상호 (법인명)	지이 (법인명)	상호	상호 (법인명)	지이 (법인명)	상호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 지이		사업장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주) 지이			
	업태	제조업	종류	제조업	제조업	제조업		
	이메일	ji@ji.com		이메일	ji@ji.com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	수령사유	비고				
20221202	10,000,000	1,000,000	제조업					
월	일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	비고
						10,000,000	1,000,000	
합계금액		원금	수표	이음	외상미수금	이 금액을 (청구) 함		
10,000,000								

본 인쇄물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발급 또는 전송 입력된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발급사실 확인은 상기 홈페이지의 "조회/발급" 전자세금계산서 > 제3차 발급사실 조회 "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충전커넥터 앞



충전커넥터 뒤

스타기업육성사업 지원성과 설문서

기업명		대표자	
설문(담당)자		연락처	Tel.

1. 본 사업에 대한 귀사의 만족도는?
 ① 아주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1-1. 만족스럽지 못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합니까?

2. 본 사업이 귀사의 전체 매출에 대해 어떤 영향이 있었습니까?(있을 것으로 예상합니까?)
 ① 매우 효과적 ② 효과적 ③ 보통 ④ 미미함 ⑤ 효과 없음
 2-1. ④, ⑤에 해당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점이 부족합니까?

3. 본 사업을 통한 기업의 전체 매출 기대효과를 기술해 주십시오.

구 분		직전년도 (2025 년)	당해연도 (2026 년)	1차년도 (2027 년)	2차년도 (2028 년)
매출액 (백만원)	내수				
	수출(직/간접)				
	계				
연구개발비					

4. 본 사업을 통한 고용창출 효과를 기술해 주십시오.

구 분	직전년도 (2025 년)	당해연도 (2026 년)	1차년도 (2027 년)	2차년도 (2028 년)
종업원수(명)				

※ 귀사의 전체 매출액, 연구개발비, 종업원수 기재 (증가분 기재 ×)

5. 본 사업을 통한 지식재산권 획득효과 또는 제품연계개발로 인한 효과를 기술하여 주십시오.

구 분 (출원/등록)	내 용	건 수	상 세 내 역 (발명의 명칭, 또는 예정명)

6. (수요조사/선택) 본 사업의 참여과정 중 ‘스타기업육성사업’지원과목 외 기업에게 필요한 지원과목이 있다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7. 본 사업의 참여과정 중 느낀 점이나 보완해야 할 점(건의사항)을 기술하여 주십시오.

스타기업육성사업 완료점검표

기 업 명		피 점 검 자	
과 제 분 야	<input type="checkbox"/> 기술사업화 자율과제	과 제 명	

평가항목	평 가 지 표	검 토 결 과
최종목표 달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결과물이 사업계획서 상 최종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과제방법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제개발 과정 및 방법이 적절하게 수행되었는가? 	
과제수행의 성실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과물에 대한 성능 및 시험평가 항목이 적절하며, 성능 및 시험평가가 객관적으로 수행되었는가?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비 집행방법 및 증빙자료가 적절한가? 	
사업성과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 결과물의 차별성, 권리확보, 매출증대, 고용창출 등 구체적인 사업성과가 있는지? 	
점검 결과	성공(), 실패(), 보완()	
종합 의견		

심사일 : 20 . . .

평가위원 소 속 :

성 명 : (서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요건 점검표**

접수번호		평가일	
기업명		대표자	

■ 신청자격

○ 필수요건

구분	항목	해당여부
①	도내 주사무소	<input type="checkbox"/>
	도내 등록공장	<input type="checkbox"/>
②	기업부설연구소	<input type="checkbox"/>
	연구개발전담부서	<input type="checkbox"/>
③	전전년도 매출 50억원 이상~700억 미만	<input type="checkbox"/>
	지식서비스업 20억원 이상	<input type="checkbox"/>
④	도내 업력 3년 이상	<input type="checkbox"/>

○ 선택요건

구분	항목	해당여부
⑤	매출액 대비 R&D 3% 이상	<input type="checkbox"/>
⑥	수출액 비중 30% 이상	<input type="checkbox"/>
⑦	2년 매출증가율 15% 이상	<input type="checkbox"/>
⑧	고용증가율 10%이상 또는 채용인원 5명이상	<input type="checkbox"/>

■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구분	항목	해당여부
①	사회적 물의	<input type="checkbox"/>
②	국세·지방세 체납	<input type="checkbox"/>
③	금융기관 규제	<input type="checkbox"/>
④	휴·폐업	<input type="checkbox"/>
⑤	법정관리, 화의절차	<input type="checkbox"/>
⑥	2년 연속 부채비율 500% 이상 2년 연속 유동비율 50% 이하	<input type="checkbox"/>
⑦	완전 자본잠식	<input type="checkbox"/>
⑧	대기업·중견기업	<input type="checkbox"/>
⑨	파산절차, 면책권자	<input type="checkbox"/>
⑩	스타기업육성사업 선정기업	<input type="checkbox"/>
⑪	참여제한 및 타사업 참여	<input type="checkbox"/>
⑫	월드클래스 300, 월드클래스플러스 글로벌강소기업 선정 기업	<input type="checkbox"/>

검토결과 (합 否)

검토결과 (합 否)

■ 가산점 (최대 10점)

구분	항목	가산점
국내규격 인증	<input type="checkbox"/> IT <input type="checkbox"/> KS <input type="checkbox"/> GQ <input type="checkbox"/> K <input type="checkbox"/> GR <input type="checkbox"/> EEC <input type="checkbox"/> GD <input type="checkbox"/> EM <input type="checkbox"/> A/S <input type="checkbox"/> 에너지마크 <input type="checkbox"/> 기타()	/최대 3점
해외규격 인증	<input type="checkbox"/> UL <input type="checkbox"/> CCC <input type="checkbox"/> CE <input type="checkbox"/> FCC <input type="checkbox"/> JIS <input type="checkbox"/> 기타()	
기타 (각1점, 단,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2점)	<input type="checkbox"/> NEP인증 <input type="checkbox"/> NET인증	/최대 10점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유망중소기업(2점)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창업사업 졸업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벤처창업지원센터(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운영) 입주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테크노파크 기술닥터 참여기업(중기애로)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참여기업	
	<input type="checkbox"/> 여성기업	
	<input type="checkbox"/> 친환경인증기업	
	<input type="checkbox"/> 성과공유제 추진기업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기업	
	<input type="checkbox"/> 소재·부품전문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기업 인증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면접수당 지급 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유망환경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ESG 진단평가 기업		
<input type="checkbox"/>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참여기업		
총 가산점		

확인자 :

(서명)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서류평가표

접수번호		평가일	
기업명		대표자	

구분	배점	세부항목	산출지표(백만원/명)	24년 평균 지표	평가방법 “2026년(2024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결과(중소기업중앙회) 적용					점수
					1% 미만 (2)	1%이상~3%미만 (4)	3%이상~5%미만 (6)	5%이상~7%미만 (8)	7% 이상 (10)	
경영 일반	40점	매출액 증가율 (성장성, 10점)	최근 3년간 CAGR ((당기 매출액/전기 매출액) ^(1/2) -1)×100	3.06%	1% 미만 (2)	1%이상~3%미만 (4)	3%이상~5%미만 (6)	5%이상~7%미만 (8)	7% 이상 (10)	
		매출액 영업이익률 (수익성, 5점)	(당기 영업이익 / 당기 매출액)×100	4.05%	2% 미만 (1)	2%이상~4%미만 (2)	4%이상~6%미만 (3)	6%이상~8%미만 (4)	8% 이상 (5)	
		부채비율 (안정성, 10점)	(당기부채 / 당기자기자본)×100	117.53%	160% 이상 (2)	130%이상~160%미만 (4)	100%이상~130%미만 (6)	80%이상~100%미만 (8)	80% 미만 (10)	
		윤리경영(5점)	기업 산업재해를 대비 동종업계 산업재해를 차이		5% 이상 (1)	3%이상 5%미만 (2)	2%이상 3%미만 (3)	1%이상 2%미만 (4)	1% 미만 (5)	
		고용증가율 (10점)	전년도 상시근로자수 /전전년도 상시근로자수×100-100 ※ 경기지역 전체 고용증가율 : 1.12% (통계청 ‘행정구역별 경제활동인구’ 26.01.14 기준)		-3% 미만 (2)	-3% 이상 (4)	1% 이상 (6)	3% 이상 (8)	5% 이상 (10)	
합 계									/ 40점	

확인자 :

(서명)

- 재무제표 기준년도 : 2024년
- 상시근로자수 기준년도 : 2025년
- 매출액증가율, 매출액 영업이익률, 부채비율 기준값 : 2025년(2024년 기준)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적용(중소기업중앙회 자료, 2026.01.09)
- 고용증가율 기준값 : 2025년 12월(전년말 대비) 경기지역 전체 고용증가율(통계청 고용통계과 자료)

스타기업육성프로젝트 발표평가표									
구분	배점	세부항목	평가기준	평가등급					점수
				불량	미흡	보통	양호	우수	
계획의 적정성	15점	명확성, 구체성	사업목표의 부합성, 목표의 명확성, 시장 및 특허조사 등 준비의 충실성, 사업기간 내 완료가능성, 제품컨셉 및 설계의 완성정도, 과제계획 및 일정의 실현가능성 및 성실성	3	6	9	12	15	
기술성	15점	핵심기술 기술개발기반	기술개발실적, 핵심기술의 우위성(차별성), 기술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4차 산업 기술·제품, 기술개발, 기술개발인력	3	6	9	12	15	
사업성	15점	미래시장성·성장성 마케팅능력	시장전망, 경쟁강도, 시장지위, 제품경쟁력, 매출성장성, 미래수익성, 판매(영업)관리, 거래안정성, 경기도 전략산업 여부	3	6	9	12	15	
기대효과	10점	지역경제활성화 등	일자리 창출 효과, 지역 내 산학연 협업 창출, 지식재산권 취득, 수입대체(단가 인하)효과, 경기도 전략산업 여부 ¹⁾	2	4	6	8	10	
윤리경영	5점	윤리경영 및 사회적책임 등	인권 및 고용평등(성별, 장애인, 비정규직), 인력개발(교육훈련비용 및 체계), 사회공헌활동 등	1	2	3	4	5	
합계	60점	평가점수		/ 60점					
종합의견									

심사위원명 :

(서명)

스타기업육성사업 평가위원 서약서

본인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의 평가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사업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모든 내용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과제에의 수행계획 및 평가내용, 수행결과 등이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신청기업 및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동의 없이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과제에의 신청기업의 임직원, 대표, 사외이사 및 고문 등 신분상의 이해관계와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가 없음을 서약한다.
4.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한다.
5. 또한, 본인은 필요시 평가내용 녹취 및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20 . . .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